

정책연구
2024-06

근로장려금 도입이 청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

진성진 · 천동민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진성진) 1
제2장 근로장려금 제도 현황	(진성진) 4
제1절 제도 개요	4
제2절 제도 현황	8
1.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	9
2.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특징	12
제3절 소 결	19
제3장 근로장려금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진성진)	21
제1절 서론	21
제2절 분석 방법	25
1. 데이터	25
2. 이중차분법 분석 모형	26
제3절 분석 결과	30
1. 처치 전 평행추세 검증 결과	30
2. 정책효과 추정 결과	32
3. 세부집단별 정책효과 추정 결과	33
제4절 추가 논의	39
1. 처치 전 평행추세 만족 :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정책효과 추정	39

2. 코로나 유행 영향에 대한 논의	42
3. 동태적 정책효과에 대한 논의	43
제5절 소 결	44
제4장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 개편	
시나리오 분석 :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중심으로	
..... (천동민)	46
제1절 연구 개요	46
제2절 정량모형(Quantitative Model)	48
1.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	48
2. 모수 설정(Calibration)	54
제3절 근로장려세제 정책 모의실험(Policy Experiment)	58
1.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단축	59
2. 근로장려금 산정식 조정 : 지급금액 확대	65
제4절 소 결	67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7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안	68
제5장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상 FGI : 제도 인지와 근로유인을	
중심으로	(진성진) 69
제1절 개 요	69
제2절 FGI 주요 내용	70
1.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 형태와 수급 경험	70
2.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	71
3.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유인 효과	73
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주기	74
5. 청년 정책으로서의 근로장려금	76
제3절 소 결	78

제6장 결 론	(진성진)	80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8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82
참고문헌		84
부 록		86

표 목 차

〈표 2-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4년 기준)	5
〈표 2- 2〉 근로장려금의 신청시점과 지급시점	6
〈표 2- 3〉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체계 변화	7
〈표 2- 4〉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 추이	10
〈표 2- 5〉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주요 변수 기초 통계값	13
〈표 2- 6〉 연령집단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율	14
〈표 2- 7〉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평균 소득과 재산	15
〈표 2- 8〉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연간보수총액	17
〈표 2- 9〉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고용보험 고용형태	17
〈표 2-10〉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	18
〈표 2-11〉 20대 단독가구 수급자의 기타 정부 사업 참여 여부	18
〈표 3- 1〉 소득구간별 근로유인 발생 경로와 방향	22
〈표 3- 2〉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연도별 관측치 수	27
〈표 3- 3〉 2019년 기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기초통계	27
〈표 3- 4〉 처치 전 평형추세 검증 결과	30
〈표 3- 5〉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33
〈표 3- 6〉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33
〈표 3- 7〉 20~24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34
〈표 3- 8〉 20~24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35
〈표 3- 9〉 25~29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35
〈표 3-10〉 25~29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35
〈표 3-11〉 고졸 이하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36
〈표 3-12〉 고졸 이하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36

〈표 3-13〉 전문대졸 이상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	37
〈표 3-14〉 전문대졸 이상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	37
〈표 3-15〉 지역(동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	38
〈표 3-16〉 지역(동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	38
〈표 3-17〉 지역(읍면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	38
〈표 3-18〉 지역(읍면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	39
〈표 3-19〉 합성을 위한 비교집단 세분화 ……	40
〈표 3-20〉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정책효과 추정 ……	41
〈표 4- 1〉 근로장려금 산정식 모수 설정(2019년 단독가구 기준) ……	55
〈표 4- 2〉 기타 모수 설정 결과 ……	56
〈표 4- 3〉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 ……	58
〈표 4- 4〉 근로장려세제 정책 모의실험 구성 ……	58
〈표 4- 5〉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단기 고용률 변화 ……	60
〈표 4- 6〉 생산성 집단별 가상(hypothetical) 반기 노동소득 ……	61
〈표 4- 7〉 지급금액 현재가치 증가 여부에 따른 단기 고용률 변화 비교 ·	63
〈표 4- 8〉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장기 고용률 변화 ……	64
〈표 4- 9〉 생애소득 집단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 : 기준경제 ……	64
〈표 4-10〉 최대 지급금액 확대에 따른 단기 고용률 변화 ……	66
〈표 4-11〉 최대 지급금액 확대에 따른 장기 고용률 변화 ……	67
〈표 5- 1〉 근로장려금 수급자 FGI 참여자 특성 ……	69

그림목차

[그림 2-1]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구조	6
[그림 2-2]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수 추이	11
[그림 2-3]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가구당 평균지급액 추이	11
[그림 2-4] 근로장려금 수급 단독가구의 연령대별 가구 수 추이	12
[그림 2-5] 20대 단독가구의 가구재산 분포	15
[그림 2-6] 20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의 수급액 분포	16
[그림 3-1] 소득-여가 모형에서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유인 증가 예시 ·	23
[그림 3-2] 집단별 종속변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비교집단 1)	29
[그림 3-3] 집단별 종속변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비교집단 2)	29
[그림 3-4] 연도별 교차항 계수 추정치(비교집단 1)	31
[그림 3-5] 연도별 교차항 계수 추정치(비교집단 2)	31
[그림 3-6] 집단별 종속변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합성 비교집단)	42
[그림 4-1] 근로장려금 지급구조(2019년 단독가구 기준)	55
[그림 4-2] 연령대별 고용률	57
[그림 4-3] 근로장려금 산정식 조정 시나리오 : 최대 지급금액 확대	66

요 약

본 연구는 2019년 정책 개편으로 인해 30대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된 것에 착안하여 근로장려금 도입이 청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장려금의 두 가지 정책 목표인 저소득자의 (1) 근로장려와 (2) 소득보조 중 근로장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제2장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설명,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통한 수급가구 수 중심 현황, 그리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30세 미만 수급자와 비수급자 비교를 다루었다. 근로장려금의 수급 요건, 지급액 결정 구조, 제도 변천 등을 소개하였고, 현황에서는 2019년 정책 개편으로 인해 30세 단독가구의 수가 단독가구 전체 증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보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에서는 30세 미만의 소득과 자산 분포, 그리고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연령집단 전체 평균과의 여러 차이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이중차분법을 통해 20대 단독가구의 노동참여가 근로장려금 도입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으로 (1) 근로장려금의 도입 효과를 본다는 점과 (2) 추정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자산요건을 대부분 만족하는 20대에 집중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가구형태로만 식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 패널 데이터가 아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해서 많은 표본을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의 도입은 2019년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노동참여를 3.03%p 증가시킨다고 추정되었다(비교집단 1, 통제변수 포함). 추정 모형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연령대(20대 초반, 20대 후반)와 교육수준(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도

시지역 여부 등으로 세부집단을 나누어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20대 후반, 전문대졸 이상, 도시지역인 집단에서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에 대한 정보 격차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1) 코로나 유행의 영향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에 다르게 나타나지 않거나 (2) 코로나 유행의 영향이 2023년 이후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위 정책 효과를 해석해야 한다. 또한, 정책효과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도입 직후 시기인 2019년에는 미미한 효과였으나 2020년부터 효과가 커진 것을 미루어 보아, 수급 경험 혹은 주변에 수급 경험자가 발생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정책 효과가 더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나이, 생산성, 자산 등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인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유인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의 노동공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개편안으로는 (1)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를 현행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단축하는 것과 (2) 지급금액 확대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급시기의 단축은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유의하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차입제약 위험이 완화되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로를 통해서 나타난다. 둘째, 지급금액 확대는 횡단면에서 생산성이 낮은 가구의 노동시장참여를 늘리나 생애 소득이 낮은 가구는 소득효과로 인해 노동공급 반응이 제한된다.

제5장에서는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FGI 내용을 다룬다. 인터뷰 결과, 연중 취업자·퇴사자 혹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된 경위는 대부분 대상자 알림을 통해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거나 주변에 수급 경험자를 통해 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근로장려금이 노동참여 유인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5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원래는 일할 계획이 없었지만 다음 해 근로장려금 받을 것을 고려해서 일부러 일을 했거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장려금 도입이 20대 단독가구의 근로유인을 증가시킨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FGI를 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현행 제도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주기 단축에 있어서는 나중의 소득이 아닌 지급 당장의 소득을 높인다는 점과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근로유인을 증가시킬 것이라 기대되지만, 지급금액이 높지 않은 관계로 현행 반기 주기 지급이나 분기 주기가 적절해 보인다. 셋째, 청년 정책으로서 근로장려금이 갖는 특징이 있었다. 신청이 간편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점, 명시적인 지원자 제한이나 재원의 제한이 없어서 지원자 간 경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자 등 소득 지원이 절실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이었다. 넷째,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증가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정책 인지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 현재 신청과 지급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급금액 결정 구조 같이 근로유인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 1 장 서 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정책으로서 (1) 근로유인 증진과 (2) 소득보조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¹⁾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 근로장려금의 수혜 대상이 30세 미만 단독가구로 확장된 것에 착안하여, 근로장려금이 30세 미만 단독가구로 대표되는 청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지원 정책으로서 근로장려금은 근로유인을 증진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수준에 따른 지급액 결정 구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구조는 소득²⁾이 오를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다가(점증구간) 일정 소득부터 소득이 올라도 지급액이 동일하게 유지되고(평탄구간) 또 다른 일정 소득부터는 소득이 오를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점감구간) 형태를 갖는다. 점증구간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증가하여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가를 포기하고 노

1)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웹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검색일 : 2024. 8. 5.)

2)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의 기준으로 ‘총급여액’(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이라는 개념이 쓰이지만, 직관적 설명을 위해 ‘소득’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동공급을 늘려서 소비를 높이는 선택의 변화, 즉 근로유인의 증진을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가 30세 미만 단독가구 노동공급에 미치는 근로장려금의 영향에 대해 중점을 둔 주된 이유는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증진 효과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장려금의 정책 효과, 즉 정책의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독립변수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혹은 수혜여부의 외생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를 고려한 연구 설계가 어려워³⁾ 인과효과 식별에 한계가 있다. 둘째, 외생성에 대한 한계를 감안하고 실증 모형을 구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충족자 혹은 수혜자 표본 크기가 가용한 데이터 내에서 너무 작기 때문에⁴⁾, 정책 효과 추정치의 정확도가 낮아지게(추정량의 표준오차가 크게) 된다.

본 연구는 인과효과 식별에 대한 한계점을 2019년(지급연도 기준)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확장이라는 준실험적 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에 착안하여 극복하고자 한다. 30세 미만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나누어서 정책도입 시점인 2019년 전후로 각 집단의 노동참여 차이의 변화(Difference-in-differences)를 정책 효과로 식별한다.

또한, 2014년(지급연도 기준)부터 차례로 확장된 단독가구 연령기준 완화(예시 : 2017년 40세 이상 단독가구 확장) 중 30세 미만 단독가구로 확장된 2019년에 집중됨으로써, 표본 크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30세 미만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1) 단독가구 비율이 높고 (2) 연령 집단 내

-
- 3)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자산요건(2024년 기준 재산합계액 2.4억 미만)만을 고려할 때, 자산요건 충족여부가 근로장려금을 제외한 다른 경로로 결과변수인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자산 가구와 저자산 가구 사이의 노동공급 차이가 다른 요인(일자리의 안정성, 교육수준, 부모의 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패널고정모형으로 시불변 요인(time-invariant factor)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시변 요인(time-variant factor)까지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4) 근로장려금 수혜여부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패널 데이터들의 표본에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율은 3%를 넘지 못한다(박지혜·이정민(2018), [그림 2] 참고, 저소득가구가 과표집된 복지패널 제외한 수치).

자산 요건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증진 효과 분석에서 더 나아가 근로유인 증진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근로장려금 정책 아래 경제 주체의 노동 결정을 반영하는 구조모형을 구성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시기와 지급시기 간의 차이(예시 : 현행 3~4개월 → 1개월)나 지급액 결정 구조 변경에 따라 노동 결정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 대상 정책으로서의 근로장려금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미혼율이 높고 소득이 비교적 낮은 30세 미만 단독가구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면서 수급가구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273만 → 593만 가구, 그중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25% 이상을 차지하였다)⁵⁾(근로소득으로 인한 수급자 기준).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를 통해 청년 단독가구에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증진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른 청년 정책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전통적인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청년 정책으로서의 의의를 파악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근로장려금 정책과 2019년 정책변화, 기초 통계를 통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30세 미만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단독가구의 특성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본다. 제3장은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증진 효과를 2019년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확장을 준실험적 설계로 활용하여 추정한다. 제4장은 근로장려금이 반영된 구조모형을 통해 지급시기와 지급결정 구조 변경이 청년의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제5장은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FGI를 통해 파악한 청년 정책으로서의 근로장려금의 의미와 근로유인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5) 국세통계포털 자료 인용.

제 2 장

근로장려금 제도 현황

제1절 제도 개요

본 절에서는 현행(2024년 지급시점 기준)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과 지급액 결정구조,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그리고 2019년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소득요건을 충족하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점의 1년 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⁶⁾이 가구 유형별 기준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유형별 기준액은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이다⁷⁾. 둘째, 재산요건은 신청 시점으로 부터 1년 전 6월 1일을 기준으로(예시 : 2024년에 신청할 경우 2023년 6월 1

6)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뜻함.”(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웹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검색일 : 2024. 8. 6.)

7)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정의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정의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웹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검색일 : 2024. 8. 6.)

〈표 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4년 기준)

소득요건 (부부합산)	지급완료시점 1년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일 것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지급완료시점 1년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가구의 범위) 지급완료시점 1년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부채 포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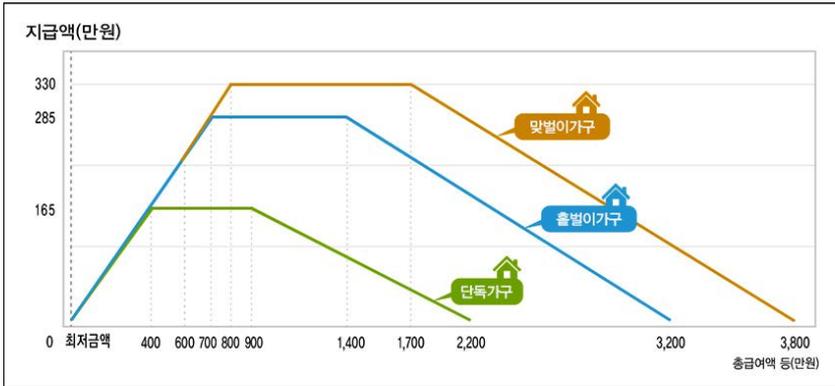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웹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일 : 2024. 8. 6.).

일)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경우 충족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 가구유형과 (2) 신청자 및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인 ‘총급여액 등’(서술 편의를 위해 총급여액으로 통칭)에 따라 결정된다. 총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각각 x축과 y축에 놓은 그래프로 지급액 결정 구조를 나타내면 사다리꼴의 형태를 띤다(그림 2-11 참고).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다가(점증구간) 설정된 총급여액 수준 이후로는 지급액의 증가 없이 유지되고(평탄구간) 그보다 큰 총급여액 기준 이후로는 지급액이 감소하여 총소득기준금액에 이르러서는 지급액이 0이 된다(점감구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재산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특징인 근로유인 증진 효과는 점증구간에서 나타난다. 점증구간에서는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에 따른 실질적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여가 선호가 바뀌지 않는 한 소비를 위해 여가를 포기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따라서 노동참여 및 근로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점증구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1]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구조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웹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검색일 : 2024. 8. 5.).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2회로 나누어 지급)과 정기신청(1회 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진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지급완료시점 1년전(t-1년으로 통칭) 9월과 지급완료시점 당해(t년으로 통칭) 3월에 신청하여 t-1년 12월에 1차지급 받고(산정액의 35%) t년 6월에 정산(지급 또는 환수)받는 방식이다. 정기신청은 t년 5월에 신청하여 t년 9월에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최초 지급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청 자격

<표 2-2> 근로장려금의 신청시점과 지급시점

	시점					
	t-1년 9월	t-1년 12월	t년 3월	t년 5월	t년 6월	t년 9월
정기 신청	-	-	-	연간소득분 신청	-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분 신청	상반기분 지급 (산정액 35%)	하반기분 신청	-	정산 (지급 또는 환수)	-

자료 : 진성진 · 전영준 · 박지혜(2022).

과 지급액 결정 구조에서 많은 정책 변화를 겪어 왔다. 구체적인 정책변화들을 <표 2-3>에 정리하였다. 신청 자격은 현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만 남아있지만, 이전에는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요건이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미포함, 주택요건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었다. 지급액 결정구조는 총소득기준금액이 증가해 왔으며(사다리꼴의 밑변이 넓어짐), 최대 지급액 또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사다리꼴의 높이가 높아짐).

<표 2-3>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체계 변화

(단위: 만 원)

지급 연도	주택요건	재산요건	가구형태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2009	무주택/ 5천만 원 이하 1주택	5천만 원 미만(전액 수급) 1억 원 미만(50% 감액)	부양자녀 1인 이상	1,700	120
2012	무주택/ 6천만 원 이하 1주택	상동	무자녀 가족가구 부양자녀 1명 부양자녀 2명 부양자녀 3명 이상	1,300 1,700 2,100 2,500	70 140 170 200
2014	상동	상동	단독가구 (60세 이상) 가족가구 - 홀별이 가족가구 - 맞별이	1,300 2,100 2,500	70 170 210
2015	무주택/ 1주택	1억 원 미만(전액 수급) 1.4억 원 미만(50% 감액)	단독가구 (60세 이상) 가족가구 - 홀별이 가족가구 - 맞별이	1,300 2,100 2,500	70 170 210
2016	상동	상동	단독가구 (50세 이상) 가족가구 - 홀별이 가족가구 - 맞별이	1,300 2,100 2,500	70 170 210
2017	주택요건 폐지	상동	단독가구 (40세 이상) 가족가구 - 홀별이 가족가구 - 맞별이	1,300 2,100 2,500	77 185 230
2018	-	상동	단독가구 (30세 이상) 가족가구 - 홀별이 가족가구 - 맞별이	1,300 2,100 2,500	85 200 250
2019	-	1.4억 원 미만(전액 수급) 2억 원 미만(50% 감액)	단독가구(연령요건 폐지) 가족가구 - 홀별이 가족가구 - 맞별이	2,000 3,000 3,600	150 260 300

〈표 2-3〉의 계속

지급 연도	주택요건	재산요건	가구형태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2022 ¹⁾	-	상동	단독가구 가족가구 - 홀별이 가족가구 - 맞벌이	2,200 3,200 3,800	150 260 300
2023	-	1.7억 원 미만(전액 수급) 2.4억 원 미만(50% 감액)	단독가구 가족가구 - 홀별이 가족가구 - 맞벌이	2,200 3,200 3,800	165 285 330

주 : 1) 2022년에는 연도 말에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음(국세청, 2022년 개정세법 해설).

자료 : 한종석 · 장용성 · 김선빈(2019); 진성진 · 전영준 · 박지혜(2022) 재인용.

특히 2019년(지급완료시점 기준)에는 자격요건과 지급액 결정구조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단독가구에 대한 30세 이상 연령 요건이 폐지되어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갖게 되었다. 총소득기준 금액(사다리꼴 밑변)은 단독가구 기준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약 54% 증가하였고 최대 지급액(사다리꼴 높이)도 단독가구 기준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약 76% 증가하였다.

제2절 제도 현황

통계 자료를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국세통계포털⁸⁾(TASIS)을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 추이 및 현황을 알아보았다. 국세통계포털은 국세청에서 매년 생산하고 공개하는 국세통계연보를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연도별, 가구 유형별, 연령집단별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8) 국세청에서 생산하고 공개하는 국세통계연보를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 (<https://tasis.nts.go.kr/>).

이에 더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증거 기반 사회보장제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 행정데이터로서 전 국민의 약 20% 규모의 표본(약 1,000만 명)을 포함하고 있다. 큰 규모의 표본과 함께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한 행정데이터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정책의 참여자의 특징 및 다른 정책의 참여 여부를 대표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전체 가구 수와 금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19년(지급 기준, 이하 정책 연도에 대해 설명이 없을 경우 지급 기준)에 있었던 정책 변화인 30세 미만 단독가구 확장과 총소득기준금액 상승, 그리고 지급액 상승에 따라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표 2-4>는 현행 가구유형(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과 자녀장려금이 도입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 규모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 수는 459만여 개이고 전체 지급액은 5.3조 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5만 원이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에서 일반가구 수가 2,207만여 개⁹⁾인 것을 감안하면 근로장려금 수급 규모가 상당함을 가늠할 수 있다.

2019년 정책 변화의 뚜렷한 영향 또한 수급자수와 지급액을 통해 엿볼 수 있다. 2019년 정책 변화 전 170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가구 수는 2019년 정책 변화 후로 450만 가구 내외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전체 금액은 가구 수 증가와 지급액 증가를 모두 반영하여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정책 변화 전 1.5조 원에서 변화 후 5.2조 원 내외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지급액의 증가만 보더라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80만 원 내외에서 110만 원대로 37%가량 증가하였다.

2019년 근로장려금의 정책 변화가 가져온 가구 수와 지급액의 급등은 단독가구 유형에서 크게 비롯되었음을 가구 유형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9)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earch/search.do?query=%EA%B0%80%EA%B5%AC%EC%88%98>, 검색일 : 2024. 8. 6.).

〈표 2-5〉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 추이

(단위 : 가구, 백만 원, 백만 원/가구)

지급 연도	근로장려금 전체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수	금액	평균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근로)	금액 (자녀)
2015	1,787,856	1,541,705	0.86	1,232,546	1,021,682	555,310	520,023	401,451
2016	1,874,525	1,487,516	0.79	1,378,953	1,028,049	495,572	459,467	351,904
2017	2,017,229	1,576,997	0.78	1,570,442	1,141,606	446,787	435,391	307,772
2018	2,079,697	1,685,371	0.81	1,693,612	1,280,821	386,085	404,550	262,931
2019	4,513,058	5,222,304	1.16	3,885,211	4,300,342	627,847	921,962	586,474
2020	4,771,106	5,186,987	1.09	4,214,277	4,391,528	556,829	795,459	519,043
2021	4,722,496	5,156,891	1.09	4,206,833	4,428,643	515,663	728,248	478,623
2022	4,813,308	5,073,786	1.05	4,362,325	4,444,702	450,983	629,084	413,507
2023	4,590,164	5,276,456	1.15	4,185,145	4,660,614	405,019	615,842	422,686

자료 : Tasis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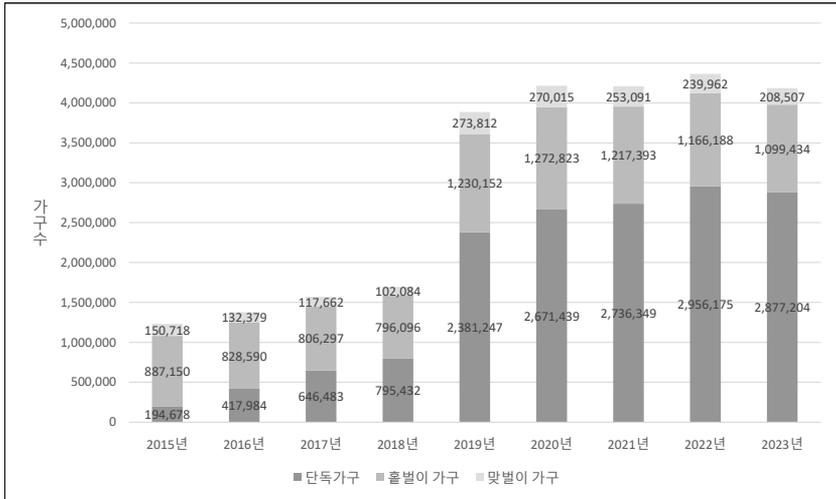
[그림 2-2]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근로·자녀장려금 동시 수급 제외¹⁰⁾)의 추이를 보여준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단독가구 수 증가분 159만(80만→238만) 가구는 전체 증가분 220만(169만→389만) 가구의 약 72%를 차지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증가 또한 단독가구에서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2-3]은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2018년과 2019년 사이 단독가구 평균 지급액이 45.7만 원에서 86.9만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단독가구의 수급가구 수가 급증한 것과 더불어 평균 지급액도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 지급액의 상승 또한 단독가구에서 비롯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2019년 정책 변화에 따른 단독가구 수 급증은 주로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진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단독가구 수의 추이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표시한 [그림 2-3]에 따르면, 2019년에만 103만여 가구의 30세 미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 단독가구 전체의 증가폭인 159만(80만→238만) 가구에서 6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근로장려금 전체 수급가구 수의 증가폭인 220만(169만→389만) 가

10) 이후 이어질 가구유형·연령별 분석에 대한 가용 자료가 국세통계포털에서 근로장려금 단독 수급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를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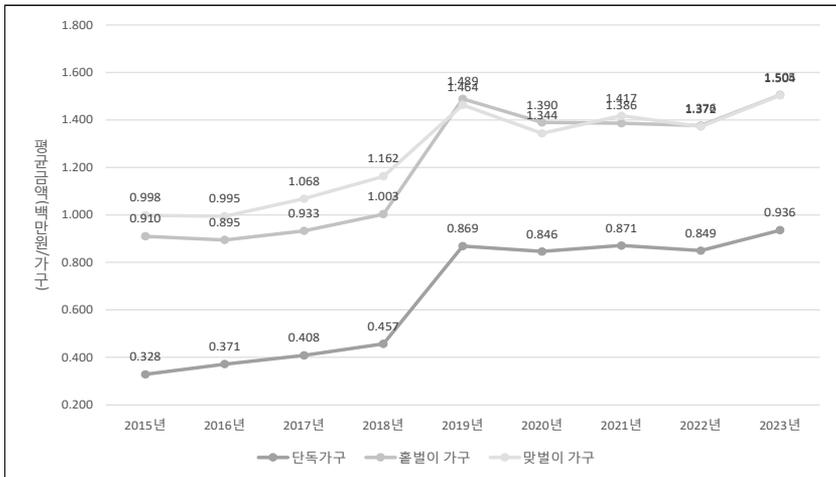
[그림 2-2]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수 추이

(단위 : 가구)

자료 : TASIS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그림 2-3]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가구당 평균지급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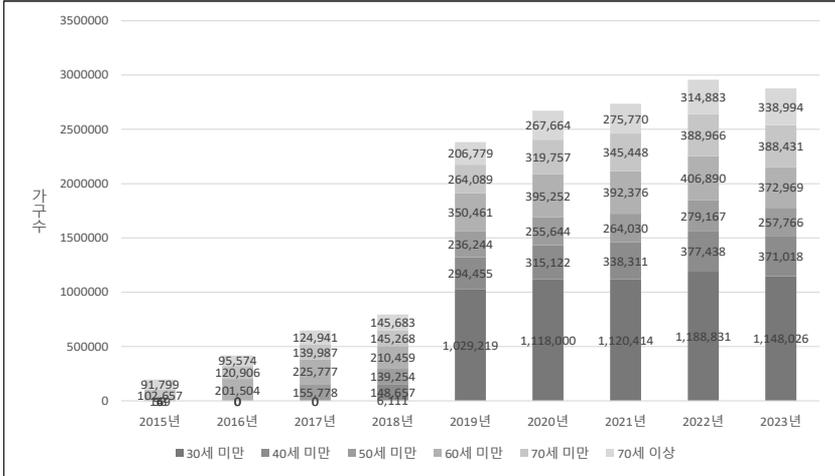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가구)

자료 : TASIS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구에서도 47%의 비중을 차지하여, 그 증가폭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총소득기준금액(사다리꼴 밑변)의 증가로 인해 가구 수의

[그림 2-4] 근로장려금 수급 단독가구의 연령대별 가구수 추이

(단위 : 가구)



자료 : TASIS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증가가 있었으나 증가폭이 10만에서 20만 가구 사이여서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증가세에 미치지 못했다. 단독가구에서 30세 미만 연령집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1) 미혼 비중이 높고 (2) 신청자격(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춘 비율이 높은 것을 꼽을 수 있다.

2.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특징

사회보장 행정데이터¹¹⁾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근거 기반 정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 대상자, 대상 유형 등을 포함하는 행정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 국민의 20% 수준인 약 1,000만 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의 구축이 최근에 이루어진 관계로 2021년 한 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로 수급자를 식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기초 정보(성별, 연령 등)와 소득 및 재산 정보(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재산평가액

1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현주(2022)를 참고하기 바란다.

등), 그리고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타 정부 정책(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체 데이터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값을 <표 2-5>에 정리하였다. 데이터의 전체 관측치 수는 약 1,019만 개이다. 아래 표에 포함된 기초 통계값만 가중치 적용 없이 계산되었다. 나이의 최솟값이 0 이고 최댓값이 100임을 통해 모든 연령대가 다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본격적인 분석은 연령집단을 나누어 수행하였다.

<표 2-6>은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을 보여준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비율은 전체의 4.87%였으며, 20대 연령집단에서 10% 내외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30세 미만 연령집단에서 대부분 단독가구 형태로 수급함을 뚜렷이 알 수 있다.

30세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소득 정보(근로소득, 가처분소득¹²⁾), 그리고 재산에 대해 파악해보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 30세 미만의 특징이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그리고

<표 2-5>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주요 변수 기초 통계값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성별	10,190,797	0.49	0.50	0.00	1.00
나이	10,190,797	44.93	21.39	0.00	100.00
가구주여부	10,190,797	0.48	0.50	0.00	1.00
가구원수	10,190,797	2.72	1.25	1.00	13.00
수도권여부	10,190,797	0.50	0.50	0.00	1.00
가처분소득(개인)	10,190,797	19,744,417	59,726,210	0	13,860,976
가처분소득(가구)	10,190,797	52,040,488	107,804,739	0	26,271,959
근로소득(개인)	10,190,797	16,022,727	39,958,973	0	3,916,866
근로소득(가구)	10,190,797	43,649,508	70,466,525	0	7,885,257
재산(개인)	10,190,797	162,985,204	573,475,794	-21,000	92,904,929
재산(가구)	10,190,797	428,235,212	1,064,868,749	-21,000	111,471,328

자료 : 2021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중치 미적용).

12) 국세청 행정데이터의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처분소득 = 일차소득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료+소득세+재산세).

〈표 2-6〉 연령집단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율

(단위 : %)

연령집단	근로장려금 미수급	근로장려금 수급				전 체
		소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5세 미만	100.00	0.00	0.00	0.00	0.00	100.00
15~19세	96.64	3.36	3.27	0.09	0.00	100.00
20~24세	88.08	11.92	11.52	0.37	0.03	100.00
25~29세	90.56	9.44	8.67	0.59	0.17	100.00
30~39세	94.43	5.57	3.83	1.32	0.41	100.00
40~49세	95.25	4.75	2.29	1.99	0.47	100.00
50~59세	95.03	4.97	2.8	1.64	0.53	100.00
60세 이상	95.67	4.33	2.28	1.68	0.37	100.00
전 체	95.13	4.87	3.29	1.26	0.33	100.00

자료 : 2021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개인 재산과 가구 재산의 차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자는 15~19세의 개인 가치분소득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집단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가치분소득, 근로소득)을 보인다. 연령집단 내에 중·고소득자와 무소득자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자는 저소득자가 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단독가구 수급자의 소득이 높지 않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세 미만의 개인 재산이 대부분 5,000만 원 미만대로 근로장려금 수급과 관계없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가구 재산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대상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전체 평균 가구재산 3~4억 원, 단독가구 가구재산 6,000~7,000만 원).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수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개인재산과 가구재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가구분류와 근로장려금의 가구분류가 다른 점에서 기인한 것이라 추측된다.

[그림 2-5]는 20대(20세 이상 30세 미만) 중 가구주이며 가구원이 1명이라고 기록된 관측치(20~24세의 18.6%, 25~29세의 25.5%), 즉 20대 단독가구로 여겨지는 대상의 가구재산 분포를 보여준다. 2억 4천만 원 이상 가구 재산을 보유한 비중이 5%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아, 95% 이상의 20대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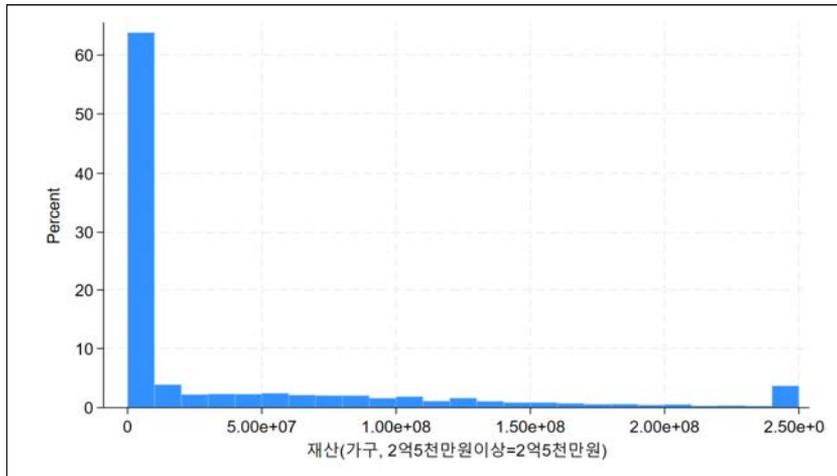
〈표 2-7〉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평균 소득과 재산

(단위 : 원)

연령집단	변수명	단독가구 수급	전체
15~19세	가처분소득(개인)	6,735,426	2,009,717
	가처분소득(가구)	39,427,068	65,398,288
	근로소득(개인)	3,082,975	958,731
	근로소득(가구)	32,209,607	60,060,381
	재산(개인)	1,894,468	2,591,037
	재산(가구)	70,741,286	484,584,382
20~24세	가처분소득(개인)	9,878,150	10,919,937
	가처분소득(가구)	33,852,669	57,588,154
	근로소득(개인)	6,574,939	9,252,702
	근로소득(가구)	27,809,060	51,713,669
	재산(개인)	9,510,381	9,583,143
	재산(가구)	72,069,343	371,785,025
25~29세	가처분소득(개인)	12,773,838	21,803,001
	가처분소득(가구)	31,777,306	58,388,630
	근로소득(개인)	8,982,155	21,308,757
	근로소득(가구)	25,411,491	52,573,718
	재산(개인)	19,557,450	34,420,766
	재산(가구)	81,488,128	335,930,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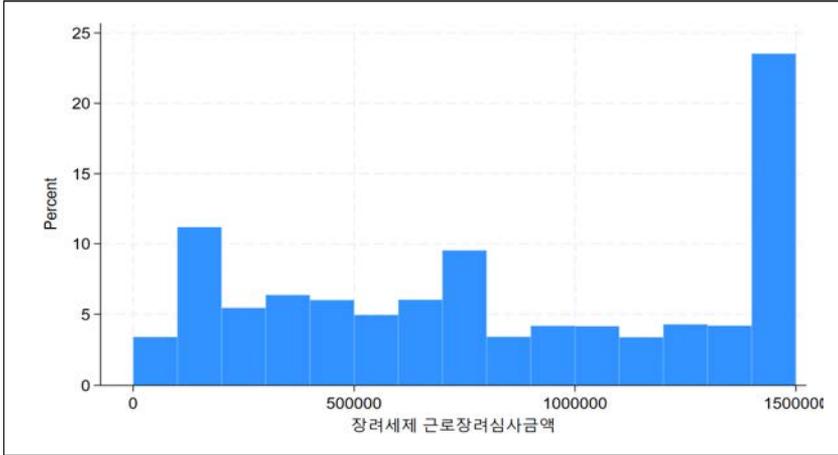
자료 : 2021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그림 2-5] 20대 단독가구의 가구재산 분포



[그림 2-6] 20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의 수급액 분포

(단위 : %)



자료 : 2021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가구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6]은 20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수급액의 분포를 보여준다. 평탄구간에 해당되어 최대 지급액 150만 원을 수급한 비중이 25%에 조금 못미치고, 나머지 75%가량은 점증구간과 점감구간에서 최대 지급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 관련 변수들을 통해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노동공급을 살펴보았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전해(t-1년)의 귀속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시점의 근로 상황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다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체 평균에 비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귀속연도(t-1년)의 근로가 지급연도(t년)의 근로로 유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계산된 연간 보수합계금액을 비교하면 단독가구 수급자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낮은 소득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올해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도 비교적 낮은 소득을 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용형태를 비교하면 20대에서 일용근로자 비율이 단독가구 수급자가 연령집단 전체 평균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15~19세는 일용근로자 비율이 50% 이상 연령집단이 가지는 특성이 근로장려금 수급여

〈표 2-8〉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연간보수총액

(단위 : %, 원)

연령집단	변수명	단독가구 수급	전 체
15~19세	고용보험 가입률	82.7	18.6
	가입자 연간보수총액	3,660,604	3,239,556
20~24세	고용보험 가입률	72.5	55.9
	가입자 연간보수총액	6,211,665	11,016,396
25~29세	고용보험 가입률	72.2	66.8
	가입자 연간보수총액	8,972,356	24,015,798

자료 : 2021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부와 관계없이 드러난다. 20대에서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고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5~29세를 보면, 미수급자인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이 92.68%인 반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수급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82.21%로 다소 낮고 그 비중의 차이는 대부분 일용근로자 비율로 전환되었다.

30세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와 연령집단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는 연령집단 평균에 비해 더 많이 일하지만(고용보험 가입률 ↑) 연간보수총액은 낮았고 고용형태상으로는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는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만

〈표 2-9〉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고용보험 고용형태

(단위 : %)

연령집단	단독가구 수급			전 체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15~19세	46.87	53.13	0.00	37.18	62.82	0.00
20~24세	67.3	32.68	0.02	72.74	27.25	0.01
25~29세	82.21	17.73	0.06	92.68	7.28	0.04

자료 : 2021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표 2-10〉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

(단위 : %)

연령집단	단독가구 수급					전 체				
	~4	5 ~29	30 ~99	100 ~299	300~	~4	5 ~29	30 ~99	100 ~299	300~
15~19세	33.8	19.6	6.4	5.2	35.0	7.5	4.7	1.7	1.3	84.8
20~24세	24.4	17.9	6.9	5.5	45.3	16.4	14.0	5.9	4.9	58.8
25~29세	21.4	19.7	8.3	6.3	44.3	12.1	17.2	9.4	7.9	53.4

자료 : 2021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족한 사람으로서 전년도(2020년)에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었고, 다음 해인 2021년에도 소득수준과 근로형태 등이 크게 바뀌지 않은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1〉 20대 단독가구 수급자의 기타 정부 사업 참여 여부

	주요 사업	20~24세		25~29세	
		단독가구 수급	전 체	단독가구 수급	전 체
고용 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0.8%	2.2%	1.1%	4.0%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여부	4.5%	3.0%	7.5%	4.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여부	2.6%	1.7%	4.6%	2.1%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1.7%	1.7%	1.4%	1.0%
교육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0.43	0.33	0.07	0.04
	국가우수장학금 수혜횟수	0.01	0.01	0.00	0.00
	국가근로장학금 수혜횟수	0.04	0.03	0.01	0.00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횟수	0.00	0.00	0.00	0.00
	학자금대출 총액	1,959,072원	1,285,511원	2,944,330원	2,150,052원

〈표 2-11〉의 계속

	주요 사업	20~24세		25~29세	
		단독가구 수급	전 체	단독가구 수급	전 체
공공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여부	2.9%	1.8%	0.9%	0.6%
	희망키움통장1 참여여부	0.1%	0.1%	0.0%	0.0%
	희망키움통장2 참여여부	0.3%	0.2%	0.1%	0.1%
	내일키움통장 참여여부	0.0%	0.0%	0.0%	0.0%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여부	0.1%	0.0%	0.1%	0.0%

자료 : 2021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 및 수혜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았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는 연령집단 평균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비율이 높았고(25~29세 기준 7.5% > 4.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율(25~29세 기준 4.6% > 2.1%)도 높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25~29세 기준 1.1% > 4.0%). 한편, 교육분야에서 차이가 드러난 부분은 국가 장학금 수혜횟수로, 단독가구 수급자가 조금 더 많이 수혜받았다(20~24세 기준 0.43회 > 0.33회). 학자금대출 총액에서도 단독가구 수급자가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0~24세 기준 196만 원 > 129만 원). 공공부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 비율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20~24세 기준 2.9% > 1.8%).

제3절 소 결

본 장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소개하고 데이터를 통해 제도 현황을 살펴보

았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 자격, 지급액 결정구조, 신청시점과 지급시점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리고 2009년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수급요건과 급여체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30세 미만 단독가구 확장, 소득기준 완화, 지급액 수준 상승이 이루어진 2019년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통해 근로장려금의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을 중심으로 2019년 제도 개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자녀장려금과 함께 받는 경우 제외)는 2018년 169만 가구에서 2019년 389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단독가구 수의 증가가 큰 기여를 하였다. 단독가구 수는 2018년 80만 가구에서 2019년 240만 가구로 증가하였는데 그중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103만 가구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통해 30세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20대의 10%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20대 단독가구(가구주이면서 가구원이 1명인 경우로 식별)의 95% 이상이 가구재산 2.4억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고용보험 변수를 통해 30세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는 연령집단 평균에 비해 더 많이 일하지만 연간보수총액은 낮았고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30세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와 연령집단 전체 평균을 다른 정부 사업 참여 여부로 비교하였다(고용노동 분야, 교육 분야, 공공부조 분야로 분류). 30세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는 연령집단 전체 평균에 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도 더 많이 하였다. 국가장학금 횟수는 조금 더 많았고 학자금 대출 총액 또한 조금 더 많았다. 공공부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근로장려금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제1절 서론

근로장려금의 정책 목표는 저소득자에 대한 (1) 근로유인 증진과 (2) 소득 지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¹³⁾.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 효과가 양(+)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반면, 근로유인 증진 효과는 이론적 기대와 달리 실증연구에서 양의 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 장에서는 2019년 정책 변화와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증진 효과를 조금 더 명확하게 식별하고 추정하고자 하였다.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증진 기능은 경제학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점증구간에서 여가(leisure)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공급을 늘리게 된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일자리가 있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근로장려금의 지급구조에 대해 인지한다면, 점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릴 때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으로 인해 실질적인 시급이 10,500원 혹은 11,000원으로 오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동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논리이다.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표 3-1〉 소득구간별 근로유인 발생 경로와 방향

소득구간	경로	결과
점증구간	(대체효과) 순임금률 증가 → 여가기회비용 증가	노동공급 ↑
	(소득효과) 실질소득 증가 → 여가시간 늘림	노동공급 ↓
평탄구간	(소득효과) 실질소득 증가 → 여가시간 늘림	노동공급 ↓
점감구간	(대체효과) 순임금률 감소 → 여가기회비용 감소	노동공급 ↓
	(소득효과) 실질소득 증가 → 여가시간 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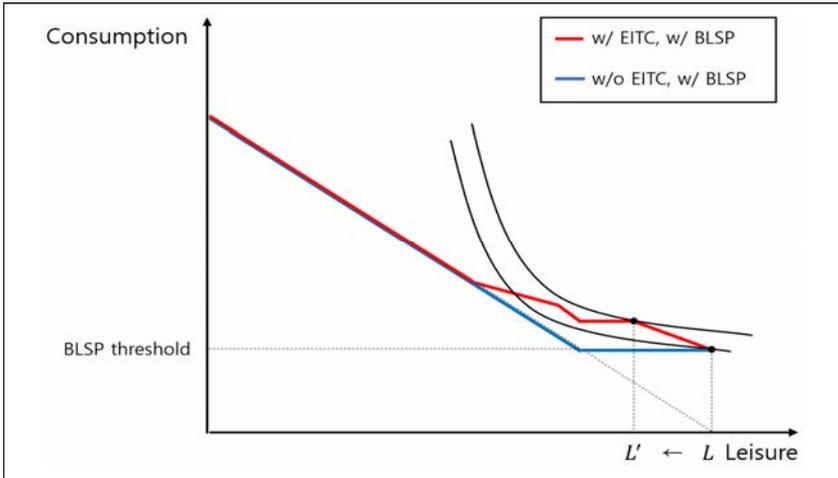
자료 : 진성진 · 전영준 · 박지혜(2022), 〈표 1-3〉.

미시경제학의 소득-여가(leisure) 모형에서는 여가에 대한 선호가 강해서 일하지 않던 사람을 임금률의 증가로 인해 일하게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여가선호가 강하다는 말은 소득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단순히 남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뿐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더 중요한 일(task)에 시간을 쓰는 경우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여가선호를 변화시키지 않는 대신 예산선(budget line)을 바꾸면서 노동참여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림 3-1]은 기초생활보장제도(BLSP)가 고려된 소득-여가 모형에서 근로장려금(EITC)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참여를 하지 않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노동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예산선의 변경이 여가를 L 에서 L' 로 줄였음을, 즉 일을 하게 유도했음을 보여준다.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유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이론적인 기대효과와는 달리 실증분석 결과들에서는 일관되게 양(+)의 효과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물론 근로장려금이 노동참여를 저해한다는 결과는 없었지만, 같은 방법론이라도 사용한 데이터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고(박지혜 · 이정민, 2018) 방법론과 데이터의 한계로 추정치의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진성진 · 오지영, 2022).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효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요인으로는 각 연구마다 주목한 시기, 정책변화, 정책 대상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책 대상과 정책 효과를 식별하기 어려운 방법론과 데이터의 한계점을 또한 꼽을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수급

[그림 3-1] 소득-여가 모형에서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유인 증가 예시



자료 : 진성진 · 전영준 · 박지혜(2022), [그림 1-2].

여부(recipient)에 대한 접근법이고 둘째는 수급자격여부(eligibility)에 대한 접근법이다. 수급여부에 대한 접근법은 핵심 독립변수를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로 두어서,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와 미수급 가구의 노동공급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남재량(2018), 신우리 · 송헌재(2018) 등을 꼽을 수 있다. 수급여부는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근로유인 효과를 과대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은 직전연도(귀속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을 텐데, 이는 근로장려금 수급효과뿐 아니라 직전연도 근로여부와 당해 근로여부의 상관관계까지 반영된 효과가 추정될 여지를 발생시킨다.

수급자격여부에 대한 접근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소득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요건(재산요건, 가구형태)을 만족한 경우를 수급자격(eligibility)으로 정의하여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수급자격을 만족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근로장려금의 노동유인 효과만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수급자격여부 접근은 주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방법론을 통해 분석되었다.

고정효과 모형에 독립변수로 수급자격여부를 두어 분석한 연구로 박지혜 · 이정민(2018), 홍우형(2021), 고지현 · 김정환 · 박정흠(2023) 등이 있다. 고

정효과 모형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면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unobserved) 시불변적(time invariant)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측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time-varying) 요인에 의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격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형태와 자산에서 결혼상태와 자산가치 등의 시변요인이 개인의 노동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한 연구로는 김문정·김빛마로(2020), 진성진·전영준·박지혜(2022) 등이 있다. 집단 간, 정책변화 전후 시점 간 차분을 통해 집단 사이의 이질성을 감안한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급자격여부 식별을 위해 자산을 측정하는 데서 발생할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와 자산정보를 담고 있는 패널 데이터의 제한된 표본 수가 정확한 추정을 어렵게 한다. 2019년 정책 변화 이후 200만여 가구에서 450만여 가구로 근로장려금 수급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데이터에서 식별되는 근로장려금 관련 관측치 수가 크지 않다는 점, 더 나아가 연령이나 가구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기에는 더더욱 관측치 수가 부족하다. 여러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했던 박지혜·이정민(2018)에 따르면 패널 데이터들(저소득 가구를 과표집한 복지패널을 제외한)의 표본에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율이 3%를 넘지 않았다.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의 편차합(표본평균으로부터 거리의 제곱합)이 계수 추정치의 표준오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족한 표본 수 및 주요 독립변수 쏠림현상은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의 부정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30세 미만 단독 가구에 대한 신청자격 확대를 준실험적 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로 활용하여 근로유인 증진 효과를 식별·추정하였다. 수급자격여부를 핵심독립변수로 두었고 이중차분법을 방법론으로 택함으로써 수급여부 접근법의 과대추정 위험을 피하고 인과적 정책효과를 추정하고자 했다. 또한 30세 미만 연령집단으로 분석 대상을 좁힘으로써 (1) '근로장려금 도입'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2) 수급자격여부를 자산보다 가구형태로 식별하여서 많은 표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0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자산 요건(2019년 기준 2억 원 미만)을 충족시키는데, 자산 정보를 포함하

는 패널 데이터가 아닌 가구 형태를 제공하는 반복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 section data)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연구에 비해 많은 관측치를 분석할 수 있다.

제2절 분석 방법

1.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택하였다. 분석 대상이 30세 미만 청년이므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몇가지 이유로 인해 패널데이터가 아닌 반복 횡단면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했다.

청년패널조사는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가구형태 식별에 한계가 있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에서 고려되는 가구형태는 주소지상 거주를 중심으로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가구 등이 정의된다. 반면, 청년패널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주 여부는 경제적 독립을 중심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더라도 학업 등을 이유로 따로 살고 있는 청년의 경우,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대상이 되며 경제활동인구조사¹⁴⁾에서 가구주로 식별된다. 그러나 청년패널조사에서는 경제적인 독립이 되지 않아서 가구주로는 식별되지 않는다. 그나마 청년패널조사에는 부모와 동거여부 변수가 있으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단독가구의 가구주로 식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식별의 어려움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형태 식별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관측 수가 확보되어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는 데이터라는 장점이 있다. 정책 효과 추정에서의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

14) 가구란,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모임을 가구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거주하고 독립적인 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간주한다(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기준 및 용어해설).

분석 범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로 정했다. 근로장려금이 자녀 수에 따라 가구형태를 나누었다가 2014년부터 현재의 가구형태(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기준이 정립된 것에 착안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2. 이중차분법 분석 모형

종속변수($Y_{i,t}$)는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여부를 노동참여 여부로 해석하여 사용하였다¹⁵⁾¹⁶⁾. 청년의 경우 학업 및 취업준비 등으로 취업에 분류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여부가 경제활동상태 등 다른 변수에 비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처치집단($\{i | D_i = 1\}$)과 비교집단($\{i | D_i = 0\}$)을 두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처치집단은 ① 20~29세, ② 배우자 없음, ③ 가구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제외한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식별하게 했다. 첫 번째 비교집단은 ① 20~29세, ② 배우자 없음, ③ 가구주 아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근로장려금의 직접적 수급 대상이 아니게끔 구성하였다.

두 번째 처치집단·비교집단 쌍은 비교집단만 달리 정의했다. 두 번째 비교집단은 ① 20~29세, ② 배우자 있음, ③ 가구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첫 번째 비교집단과 달리 2019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장려금의 수급 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해 온 집단을 식별하고자 했다. 처치집단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은 반면, 비교집단들은 모두 2019년 전후 정책 대상 여부가 변하지 않았다.

처치시점은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2019년으로 정했다. 정책 확대에 대한 발표는 2018년 7월에 이루어졌고 법률 공

15) 이 설문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2014년은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을 일함으로 응답하거나 주된 활동이 일함이 아니더라도 지난 1주일간 수입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할 경우를 2015년 이후의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취업여부와 동일하게 식별하였다.

16) 하첨자 i 는 개인에 대한 식별자이며 t 는 시점(연도)에 대한 식별자이다.

〈표 3-2〉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연도별 관측치 수

	처치집단 (20~29세, 배우자 없음, 가구주)	비교집단 1 (20~29세, 배우자 없음, 가구주 아님)	비교집단 2 (20~29세, 배우자 있음, 가구주)	20~29세 전체
2014	6,579	61,942	2,767	79,196
2015	7,559	61,383	2,825	79,448
2016	7,894	60,137	2,567	77,036
2017	8,797	58,930	2,219	75,789
2018	10,557	59,065	1,987	76,807
2019	11,527	58,155	1,989	76,190
2020	12,103	58,262	2,023	76,902
2021	10,634	48,341	1,605	64,073
2022	13,510	53,688	1,824	72,689
2023	13,452	50,545	1,696	69,063
2024	9,117	31,132	1,088	43,49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표 3-3〉 2019년 기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기초통계

		처치집단 (20~29세, 배우자 없음, 가구주)	비교집단 1 (20~29세, 배우자 없음, 가구주 아님)	비교집단 2 (20~29세, 배우자 있음, 가구주)
관측치 수		11,527	58,155	1,989
배우자 유무		0.0%	0.0%	100.0%
만 나이		25.3세	24.5세	27.2세
여성 비율		44.1%	49.8%	14.3%
교육 수준	무학	0.0%	0.0%	0.1%
	초등학교	0.1%	0.1%	1.4%
	중학교	0.7%	0.6%	5.6%
	고등학교	19.0%	16.2%	35.8%
	전문대(초급대, 2·3년제)	17.7%	25.8%	25.3%
	대학교(4년제 대학 포함)	57.5%	55.5%	27.9%
	대학원(석사)	4.5%	1.7%	2.2%
	대학원(박사)	0.5%	0.2%	1.8%
소계		100.0%	100.0%	100.0%
지난 1주일간 근로 여부		68.3%	54.4%	85.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또는 2018년 12월에 이루어졌다. 정책 발표와 법률 공포 시점에 즉각적으로 정책 변화를 인지하고 노동참여 결정에 반영한다고 보면 2018년을 처치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정책 변화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개편 후 근로장려금 첫 지급이 이뤄진 시점인 2019년을 시행시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Post_t = I(t \geq 2019)$).

통계변수 벡터($X_{i,t}$)는 성별(남성일 경우 0, 여성일 경우 1), 각 교육수준 더미변수(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동·읍면부여부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선형확률 모형을 아래와 같이 구성했다. 정책효과는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정책개입 전후로 비교한 교차항의 계수 β_3 으로 식별된다.

$$Y_{i,t} = \beta_1 D_i + \beta_2 Post_t + \beta_3 D_i \times Post_t + \beta_4 X_{i,t} + \epsilon_{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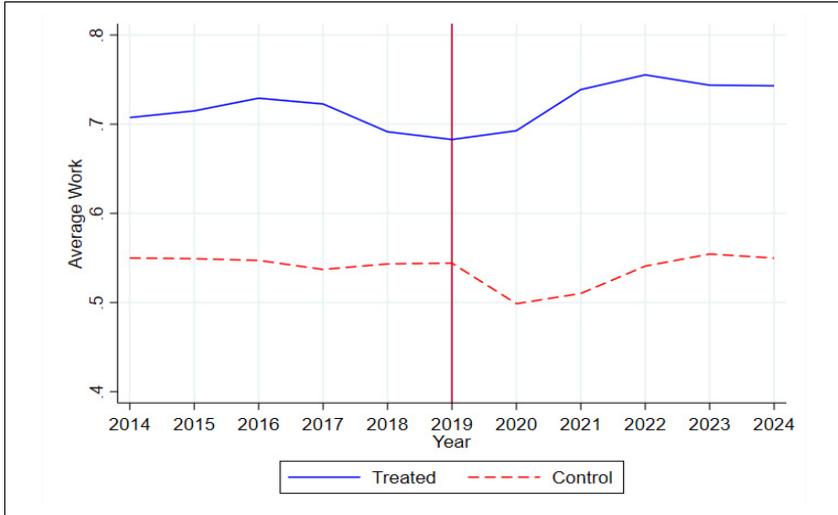
이중차분법의 핵심가정인 평행추세가정(parallel trend assumption)을 검증하기 위해 처치 전 집단 간 추세가 평행했는지 사건 연구(event study) 방법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증한다. 처치 직전 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두고 각 연도별로 더미변수와 처치여부의 교차항을 넣어서 집단 간 차이가 기준연도와 같은지를 확인한다. 처치 전 평행추세 검증을 위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Y_{i,t} = \beta_1 D_i + \sum_{j \in \{2014, 2015, \dots, 2024\} - \{2018\}} \beta_{2,j} I(t=j) + \sum_{j \in \{2014, 2015, \dots, 2024\} - \{2018\}} \beta_{3,j} D_i \times I(t=j) + \beta_4 X_{i,t} + \epsilon_{i,t}$$

처치 전 평행추세 검증을 하기 앞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종속변수 평균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자. 아래 두 그림은 각각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1, 그리고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2의 종속변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를 보여준다. 비교집단 1과 처치집단은 처치 전(2019년 이전) 집단 간 종속변수 평균값 차이가 0.15에서 0.2 정도로 나타난다. 집단 간 차이는 2016년에 가장 작았고 2014년에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비교집단 2와 처치집단의 처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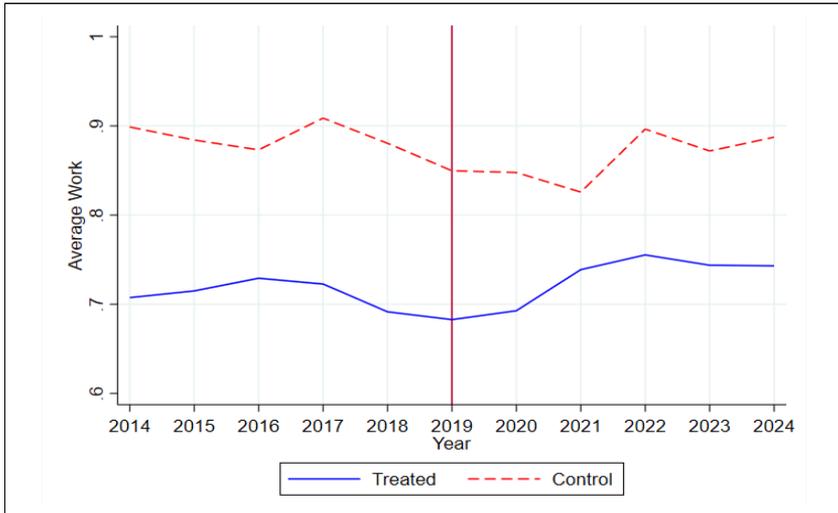
집단 간 차이는 0.15에서 0.18 정도로 비교집단 1보다는 간격이 좁고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림 3-2] 집단별 종속변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비교집단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그림 3-3] 집단별 종속변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비교집단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제3절 분석 결과

1. 처치 전 평행추세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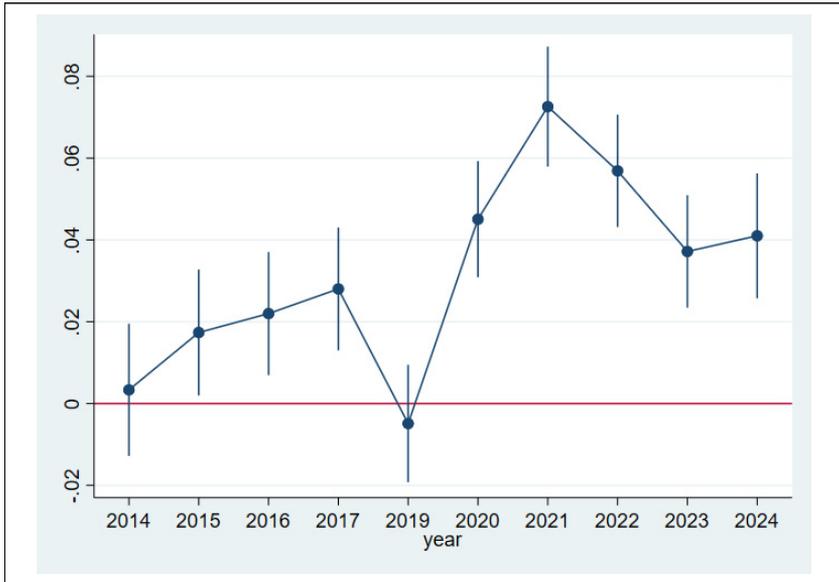
먼저 처치 전 평행추세를 검증하기 위해 연도별 더미변수와 교차항을 삽입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표 3-4>에 정리하였다. 비교집단 1과 처치집단을 비교한 모형 1과 2의 경우 교차항의 계수가 2015년, 2016년, 2017년에서 통

<표 3-4> 처치 전 평행추세 검증 결과

변수		종속변수 :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교 차 항 계 수	2014 × D_i	0.0092 (0.0084)	0.0033 (0.0082)	-0.0023 (0.0123)	-0.0143 (0.0123)
	2015 × D_i	0.0175* (0.0080)	0.0174* (0.0079)	0.0197 (0.0123)	0.0093 (0.0123)
	2016 × D_i	0.0337*** (0.0078)	0.0220** (0.0077)	0.0451*** (0.0125)	0.0290* (0.0126)
	2017 × D_i	0.0373*** (0.0077)	0.0280*** (0.0077)	0.003 (0.0121)	-0.006 (0.0122)
	2019 × D_i	-0.0096 (0.0074)	-0.0049 (0.0073)	0.0222 (0.0132)	0.0228 (0.0132)
	2020 × D_i	0.0458*** (0.0073)	0.0451*** (0.0072)	0.0340** (0.0132)	0.0304* (0.0132)
	2021 × D_i	0.0805*** (0.0075)	0.0726*** (0.0075)	0.1021*** (0.0145)	0.1065*** (0.0146)
	2022 × D_i	0.0662*** (0.0071)	0.0569*** (0.0070)	0.0479*** (0.0126)	0.0519*** (0.0128)
	2023 × D_i	0.0412*** (0.0071)	0.0372*** (0.0070)	0.0610*** (0.0130)	0.0564*** (0.0132)
	2024 × D_i	0.0450*** (0.0079)	0.0410*** (0.0078)	0.0448** (0.0142)	0.0435** (0.0144)
관측치 수		713,309	713,309	134,319	134,319
비교집단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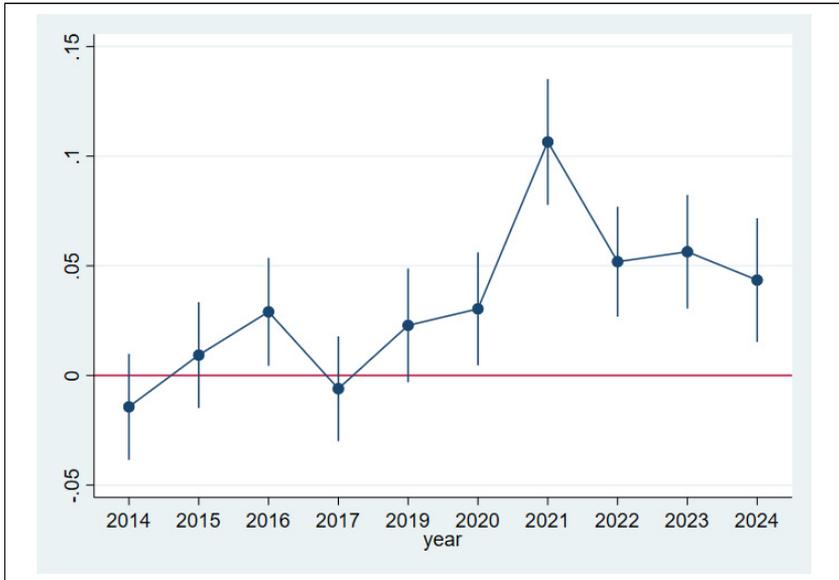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그림 3-4] 연도별 교차항 계수 추정치(비교집단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그림 3-5] 연도별 교차항 계수 추정치(비교집단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추정되었다. 이는 처치 전의 추세가 평형하다는 가정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다만 처치 직전 시점인 2018년에 종속변수 결핍값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 2015~2017년까지의 집단 간 차이는 오히려 비슷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는 2018년에 두 집단 간 차이에서 노이즈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비교집단 2와 처치집단을 비교한 모형 3과 4의 경우 2016년에서 집단 간 종속변수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고 나타냈지만 다른 시기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와서 일정한 차이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4]~[그림 3-5]는 모형 2와 모형4의 교차항 계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어,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는지를 통해 기준연도와 해당연도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 수 있다.

2. 정책효과 추정 결과

〈표 3-5〉와 〈표 3-6〉에는 비교집단별로 추정된 정책효과를 보고하였다. 모형 1부터 모형 3은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이고 모형 4에서 6은 분석 방법에서 언급한 통제변수가 포함된 선형확률 모형이다. 모형 2와 4는 코로나19 유행 충격으로 인한 집단 간 구조적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2020년, 2021년, 2022년 시점을 제거한 모형이다. 모형 3과 6은 시점 제거와 함께 처치시점을 2019년이 아닌 발표시점인 2018년으로 변경한 모형이다.

비교집단 1의 추정 결과에서는 코로나 유행 시점 제거와 처치시점 변경이 없는 모형에서 2.84%p(모형 1), 3.03%p(모형 4) 증가한 정책효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시점을 제거할 경우(모형 2, 5) 1%p 내외에서 증가했다는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 효과는 여전히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나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점을 제거하고 처치시점을 2018년으로 변경했을 경우(모형 3, 6) 정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2018년에는 정책변화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비교집단 2에 대한 추정 결과는 앞서 비교집단 1의 추정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되 전반적으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모든 시점에서 분석된 모형에서는 정책 효과가 각각 4.27%p(모형 1)와 5.25%p(모형 4) 증가한

〈표 3-5〉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변수	종속변수 :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284*** (0.0033)	0.0083* (0.0039)	-0.004 (0.0039)	0.0303*** (0.0033)	0.0131*** (0.0039)	0.0026 (0.0039)
관측치 수	713309	516771	516771	713309	516771	516771
비교집단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표 3-6〉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변수	종속변수 :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427*** (0.0056)	0.0351*** (0.0070)	0.0182** (0.0065)	0.0525*** (0.0057)	0.0442*** (0.0071)	0.0303*** (0.0066)
관측치 수	134319	92620	92620	134319	92620	92620
비교집단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유행 시점을 제거한 모형과 처치시점을 2018년으로 바꾼 모형은 정책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그대로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보이고 있다.

3. 세부집단별 정책효과 추정 결과

세부집단별 정책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자.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처치시점 등에 대한 분석방법의 큰 틀은 그대로 두되, 분석에 사용되는 관측치를 세부집단에 해당하는 관측치로 제한시킴으로써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세부집단은 연령별로 20~24세와 25~29세, 교육수준별로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었다.

세부집단과 비교집단 쌍에 맞추어 추정 결과를 아래 표에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세부집단에서 모형별로 나타나는 경향과 비교집단별로 나타나는 경향은 앞서 보았던 전체 정책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 비교집단 1에 비해 비교집단 2를 활용한 정책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경향, (2) 통제변수를 포함시킨 모형에서 정책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경향, 그리고 (3) 시점을 제거하거나 처치시점을 변경하는 변화를 줄수록(모형 1→3, 모형 4→6) 정책 효과의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은 여러 세부집단의 정책효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비교집단이나 모형별 비교보다는 동일한 분류에서 세부집단별 정책효과를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20~24세와 25~29세를 비교하면, 25~29세에서 정책효과가 크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집단 1의 모형 5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24세의 정책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25~29세의 정책효과는 2.81%p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대 전체에서 양(+)의 효과가 나왔던 것은 대부분 20대 후반 연령집단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0~24세의 모형 3과 모형 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가 보고되었는데, 음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장려금의 효과라는 것을 미루어볼 때 처치시점을 2018년으로 두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오히려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7〉 20~24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변수	종속변수 :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052 (0.0059)	-0.0112 (0.0070)	-0.0310*** (0.0070)	0.0136* (0.0056)	0.0025 (0.0066)	-0.0166* (0.0066)
관측치 수	359254	262234	262234	359254	262234	262234
세부집단	20~24세	20~24세	20~24세	20~24세	20~24세	20~24세
비교집단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표 3-8〉 20~24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변수	종속변수: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099 (0.0214)	-0.0179 (0.0254)	-0.0192 (0.0240)	0.005 (0.0223)	-0.0143 (0.0264)	0.0022 (0.0247)
관측치 수	41962	28889	28889	41962	28889	28889
세부집단	20~24세	20~24세	20~24세	20~24세	20~24세	20~24세
비교집단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표 3-9〉 25~29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변수	종속변수: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432*** (0.0039)	0.0235*** (0.0046)	0.0206*** (0.0046)	0.0457*** (0.0039)	0.0281*** (0.0046)	0.0278*** (0.0046)
관측치 수	354055	254537	254537	354055	254537	254537
세부집단	25~29세	25~29세	25~29세	25~29세	25~29세	25~29세
비교집단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표 3-10〉 25~29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변수	종속변수: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476*** (0.0058)	0.0408*** (0.0071)	0.0339*** (0.0067)	0.0510*** (0.0058)	0.0411*** (0.0072)	0.0351*** (0.0067)
관측치 수	92357	63731	63731	92357	63731	63731
세부집단	25~29세	25~29세	25~29세	25~29세	25~29세	25~29세
비교집단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교육수준으로 나눈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은 정책 효과가 추정되었다. 비교집단 1의 모형 5의 결과를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 세부집단을 비교해보면, 고졸 이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났지만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2%p 증가하는 효과가 추정되었다. 연령과 교육수준이 20대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짐작되는바, 앞서 높은 연령대에서 보다 큰 정책효과가 추정되었던 결과와 일관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11〉 고졸 이하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변수	종속변수 :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029 (0.0068)	-0.0052 (0.0081)	-0.0175* (0.0080)	-0.0026 (0.0068)	-0.0112 (0.0081)	-0.0244** (0.0080)
관측치 수	116344	81349	81349	116344	81349	81349
세부집단	고졸이하	고졸이하	고졸이하	고졸이하	고졸이하	고졸이하
비교집단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통계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표 3-12〉 고졸 이하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변수	종속변수 :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09 (0.0104)	0.0041 (0.0125)	-0.0059 (0.0118)	-0.0008 (0.0102)	-0.015 (0.0125)	-0.0217 (0.0116)
관측치 수	31292	21603	21603	31292	21603	21603
세부집단	고졸이하	고졸이하	고졸이하	고졸이하	고졸이하	고졸이하
비교집단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통계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표 3-13〉 전문대졸 이상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변수	종속변수 :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391*** (0.0038)	0.0168*** (0.0045)	0.0035 (0.0045)	0.0403*** (0.0037)	0.0200*** (0.0044)	0.0101* (0.0044)
관측치 수	596965	435422	435422	596965	435422	435422
세부집단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비교집단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통계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표 3-14〉 전문대졸 이상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변수	종속변수 :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489*** (0.0066)	0.0448*** (0.0083)	0.0221** (0.0076)	0.0667*** (0.0066)	0.0622*** (0.0085)	0.0409*** (0.0077)
관측치 수	103027	71017	71017	103027	71017	71017
세부집단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비교집단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통계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동부와 읍면부 세부집단 결과에서는 동부에서 더 큰 정책효과가 보고되었다. 비교집단 1의 모형 5 결과를 동부와 읍면부 간 비교해보면, 동부에서 1.32%p, 읍면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정책효과가 보고되었다. 다만 읍면부와 비교집단 2에 대한 분석에서 관측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3-15〉 지역(동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변수	종속변수: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267*** (0.0035)	0.0095* (0.0042)	-0.0013 (0.0042)	0.0279*** (0.0035)	0.0132** (0.0041)	0.0037 (0.0041)
관측치 수	620159	448395	448395	620159	448395	448395
세부집단	동부	동부	동부	동부	동부	동부
비교집단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표 3-16〉 지역(동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변수	종속변수: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428*** (0.0061)	0.0395*** (0.0076)	0.0238*** (0.0070)	0.0547*** (0.0062)	0.0513*** (0.0077)	0.0374*** (0.0072)
관측치 수	118373	81504	81504	118373	81504	81504
세부집단	동부	동부	동부	동부	동부	동부
비교집단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표 3-17〉 지역(읍면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변수	종속변수: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261* (0.0105)	-0.0181 (0.0123)	-0.0507*** (0.0123)	0.0375*** (0.0103)	-0.0002 (0.0120)	-0.0260* (0.0120)
관측치 수	93150	68376	68376	93150	68376	68376
세부집단	읍면부	읍면부	읍면부	읍면부	읍면부	읍면부
비교집단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비교집단 1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표 3-18〉 지역(읍면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변수	종속변수 :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교차항 계수	0.0259 (0.0152)	-0.0132 (0.0184)	-0.0488** (0.0169)	0.0328* (0.0150)	-0.012 (0.0184)	-0.0354* (0.0168)
관측치 수	15946	11116	11116	15946	11116	11116
세부집단	읍면부	읍면부	읍면부	읍면부	읍면부	읍면부
비교집단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비교집단 2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점 제거	×	○	○	×	○	○
처치시점 변경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세부집단에서 나타난 경향을 종합해보면, 20대 후반, 높은 교육수준, 도시지역에서 근로장려금의 도입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정책 내용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데, 세부집단에서의 정책 효과가 높은 것이 주로 정보 파악이 빠른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4절 추가 논의

1. 처치 전 평행추세 만족 :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정책효과 추정

이중차분법은 집단 간 잠재결과(potential outcome without treatment)가 평행하다는 평행추세가정(parallel trend assumption)하에서 인과적인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그러나 평행추세가정의 부분에 해당하는 처치 전 추세가정을 검증하는 사건 연구(event-study) 모형에서 두 비교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 즉 처치 전 차분이 일정하지 않음이 보고되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비교집단 1의 경우 기준이 되는 2018년이 다른 처치 전 시점에 비해 집단 간 차이가 작고 다른 처치 전 시점인 2014~2017년에는 집단 간 차이가 일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의 차분에 노이즈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비교집단 2의 경우는 2016년의 차분 외에 다른 처치 전 시점은 일정한 차분을 보였다는 점에서 2016년 차분에 노이즈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추가 논의에서는 비교집단을 가중치를 두어 합성한 합성비교집단을 사용해 처치 전 평행추세를 만족시키는 방법론인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¹⁷⁾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해보았다.

〈표 3-19〉 합성을 위한 비교집단 세분화

세부 비교집단 구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졸업여부
1	남성	20~24세	고졸 이하	미졸업
2	남성	20~24세	고졸 이하	졸업
3	남성	20~24세	초대졸 이상	미졸업
4	남성	20~24세	초대졸 이상	졸업
5	남성	25~29세	고졸 이하	미졸업
6	남성	25~29세	고졸 이하	졸업
7	남성	25~29세	초대졸 이상	미졸업
8	남성	25~29세	초대졸 이상	졸업
9	여성	20~24세	고졸 이하	미졸업
10	여성	20~24세	고졸 이하	졸업
11	여성	20~24세	초대졸 이상	미졸업
12	여성	20~24세	초대졸 이상	졸업
13	여성	25~29세	고졸 이하	미졸업
14	여성	25~29세	고졸 이하	졸업
15	여성	25~29세	초대졸 이상	미졸업
16	여성	25~29세	초대졸 이상	졸업

자료 : 저자 작성.

17) 방법론의 구체적 내용은 Arkhangelsky et al.(2021)을 참조.

앞선 이증차분법 분석과 세부사항을 공유한다. 분석시점은 2014년부터 2024년이며, 처치집단(20~29세, 배우자 없음, 가구주)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처치시점도 2019년으로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합성통제집단 이증차분법은 패널데이터에 대한 방법론이므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에 속한 개인을 집단화해서 연도별로 하나의 관측치로 대체시켰다. 비교집단을 합성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했던 비교집단 1(20~29세, 배우자 없음, 가구주 아님)을 세분화해서 16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나뉜 그룹은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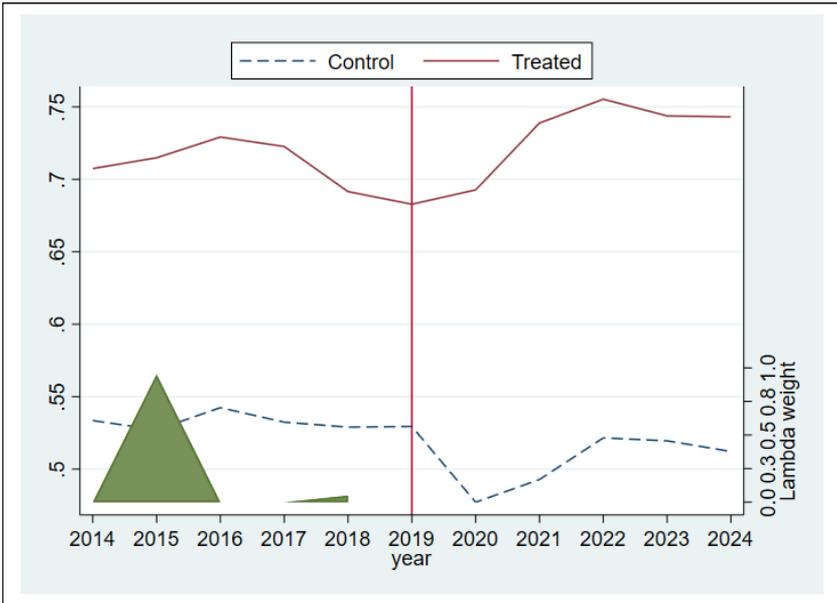
〈표 3-20〉은 처치 전 추세평형을 이루도록 조정한 합성 비교집단으로부터 추정된 정책효과 결과를 보고한다. 두 모형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추정되었지만 이는 집단으로 패널을 구성한 과정에서 발생한 추정 정확도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효과와 크기만 보면 3.08%p와 1.52%p 증가로, 대응되는 이증차분법 모형인 비교집단 1의 모형 1과 2의 정책효과 2.84%p와 0.83%p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처치 전 평형이 어느정도 만족된 상황에서도 양의 효과가 여전히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20〉 합성통제집단 이증차분법을 적용한 정책효과 추정

변수	종속변수: 지난 1주일간 수익 목적 근로 여부	
	모형 1	모형 2
교차항 계수	0.0308 (0.0405)	0.0152 (0.0488)
관측치 수	187	136
비교집단	합성 비교집단	합성 비교집단
통제변수 포함	미포함	미포함
시점 제거	×	○
처치시점 변경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그림 3-6] 집단별 종속변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합성 비교집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년.

2. 코로나 유행 영향에 대한 논의

[그림 3-2]와 [그림 3-3]에서 종속변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비교집단 1과 2는 정책 변경이 일어난 2019년이 아닌 2020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처치집단은 2020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중 차분법은 평행추세가정을 통해 집단 간 이질성을 모두 통제하고 정책의 변화만을 보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코로나 유행의 충격 또한 각 집단의 격차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코로나 유행이라는 외부적 충격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영향의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정책효과의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코로나 시기인 2020~2022년을 제외한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정상화된 2023년 이후에도 코로나 시기의 충격이 남아있을 경우를 배제하긴 어렵다.

본 장에서 추정된 여러 정책 효과들은 ① 코로나 유행의 충격이 있더라도

그 영향이 집단별로 크게 다르지 않거나 ② 코로나 유행의 충격이 집단별로 달리 나타나더라도 2023년 이후에는 그 영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유효한 정책 효과이다. 코로나 유행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에 구조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2023년 이후 그 영향이 남아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당장의 분석들에서는 검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추후 연구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3. 동태적 정책효과에 대한 논의

처치시점별로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이 도입된 2019년보다 그 이후인 2020년부터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가 2023년부터 그 크기가 조금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에서 2019년의 교차항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교차항 계수를 보면 각각 4.58%p, 8.05%p, 6.62%p, 4.12%p, 4.50%p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일정 수준으로 내려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표 3-5>와 <표 3-6>에 보고된 정책효과 추정치에서 모든 시점을 포함한 모형 1과 모형 4의 추정치가 2020년부터 2022년을 제외한 모형 2와 모형 5에서 더 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효과의 동태적 변화는 근로장려금 도입 후 정책 대상자들의 정책 인지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유인 효과는 정책 대상자가 정책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더 나아가 지급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인지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2019년에 30세 미만 가구가 처음으로 대상이 되어 수급하는 시점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노동 결정에 영향이 없었다면, 2020년부터는 수급을 했던 경험이나 주변에 수급자의 경험들이 알려짐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감안한 노동참여 결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2020년, 2021년, 2022년의 정책효과가 2023년 이후 효과보다 크게 추정된 데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도입의 효과가 코로나 유행을 맞아 더 크게 부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5절 소 결

본 장은 2019년 근로장려금이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확장된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도입이 20대 단독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대상을 30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수급대상여부가 자산이 아닌 가구형태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표본 수가 많고 대표성을 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근로장려금의 정책 변화가 아닌 도입의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의 도입은 2019년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노동참여를 3.03%p 증가시킨다고 추정되었다(비교집단 1, 통제변수 포함). 비교집단의 종류와 코로나 유행기간 포함 여부 등을 다르게 한 추정 모형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조금씩 다르게 추정되었으나 최소 0.8%p(비교집단 1, 통제변수 미포함, 코로나 시점 제거)에서 최대 5.25%p(비교집단 2, 통제변수 포함, 코로나 시점 포함)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추정되었다.

연령, 교육수준, 지역으로 구분한 세부집단 분석을 통해서는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도시 지역일수록 정책효과가 크게 추정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근로장려금의 제도에 대한 정보 격차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보고된 정책효과들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로, 추정된 정책효과는 이중차분법에서 만족해야 할 처치 전 평행추세가 맞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적용해보았고 정책효과의 크기에서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했다. 둘째로, 2020~2022년 코로나 유행의 영향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에 다르게 나타나거나 정상화된 2023년 이후에도 그 영향이 남아있을 경우엔 보고된 정책효과들의 편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유행의 집단별 실질적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로 남겨둔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유인 효과는 처치 직후인 2019년에는 미미하였으나 그 후로 커진 것으로 보

이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20대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경험이 쌓이고 주변에 수급자들을 통해 정책을 인지하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제 4 장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 개편 시나리오 분석 :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중심으로

제1절 연구 개요

이번 장에서는 생산성, 자산, 나이 등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개편 방안에 따른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유인(incentive)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장려세제 개편 시나리오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한다. 첫째, 노동소득의 발생 시점과 이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2018년 개편 전까지 당해연도 노동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 연도 하반기(9월)에 받게 되는 구조였으며 현행 제도의 정기신청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근로장려세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미국의 경우 매년 노동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그다음 해 상반기(3월경)에 지급되어 우리나라 제도의 정기신청보다 6개월가량 빠르다(진성진 외, 2022). 우리나라처럼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그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시점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제도의 대상 가구들이 노동공급 결정 당시에 근로장려금의 노동 유인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장려금 산정식에 대한 개편 방안을 고려한다. 제2장 제1절에 소개된 것처럼 근로장려금의 산정식은 (소득이 커짐에 따라 장려금이 점차 증가하는) 점증구간, 점감구간, 최대 지급구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특성으로 인해 제도 자체로도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만 최대 지급금액이나 점증구간 길이 등 각 구성요소의 세부 설계에 따라라도 노동공급 유인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정식 개편 시나리오로 지급금액 확대를 고려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으로는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모형(heterogeneous-agent life-cycle model)을 이용한다(Huggett, 1993; Aiyagari, 1994). 이러한 유형의 모형을 이용하여 EITC의 제도 개편 효과를 분석한 기존 문헌으로는 한종석·장용성·김선빈(2019), Froemel and Gottlieb (2021), Han et al.(2021), Ortigueira and Siassi(2022) 등이 있다. 한종석·장용성·김선빈(2019)은 연령, 소득 등 여러 자격요건의 완화와 최대 지급금액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진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2018년 확대 개편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Han et al.(2021)에서는 이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 완화 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Froemel and Gottlieb (2021)은 미국 EITC의 개편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소득요건을 고정한 상태에서 최대 지급금액을 늘리는 정책 모의실험을 고려했다. Ortigueira and Siassi(2022)는 미국 EITC의 소득요건에서 가구 내 부소득자(secondary-earner)의 소득을 공제하는 개편안의 효과를 분석했다.

본 장의 연구가 근로장려세제 정책 모의실험의 측면에서 이들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자격요건 등 제도의 다른 부분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지급시기만을 앞당기는 개편안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모형의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 달리 모형 내 시간의 단위를 1년이 아닌 반기로 설정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를 보다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이용한 연구 중 모형 내 기간의 단위를 1년보다 짧게 설정한 연구로는 Erosa et al.(2016)이 거의 유일하다. Erosa et al.(2016)은 모형 내

기간이 4개월 단위(quadrimester)인 환경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처럼 같은 연도 내 시점에 의존하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았다. 생애주기 모형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면 모형의 계산시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 우선 시간의 단위를 잘게 함에 따라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¹⁸⁾ 또한 가구의 과거 상태(예를 들어 전년도 소득)에 의존하는 제도를 반영하려면 가구의 상태변수가 추가로 필요해지는데 이에 따라 모형의 계산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번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정량분석을 위한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과 모수 설정 결과를 소개하고 기준경제의 현실경제에 대한 설명력을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정량화된 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 정책 모의실험(policy experiment)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제2절 정량모형(Quantitative Model)

1.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

제2절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 모의실험에 사용할 정량모형인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heterogeneous-agent life-cycle model)을 소개한다.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은 Huggett(1993), Aiyagari(1994) 등에 의해 개발된 이후 거시경제학 문헌에서 매우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모형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Froemel and Gottlieb(2021), Ortigueira and Siassi(2022) 등 근로장려세제 문헌에서도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먼저 모형 내에서 시간의 단위는 반기로 설정한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시점을 우리나라 현행 제도(정기신청)에 가까운 형태로 고려하기 위함이다.

18) 예를 들어 25세부터 74세까지의 생애주기 모형에서 시간 단위를 연간으로 하면 50기간, 반기로 설정하면 200기간 모형이 된다.

다. 또한 본 장에서는 모형 내 모든 가구를 단독가구로 간주하고 근로장려세제 또한 단독가구에 대한 지급체계를 고려한다.¹⁹⁾ 모형경제에서 모든 가구는 25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65세부터 은퇴하고 74세까지만 생존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사망확률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 은퇴 이후 가치함수

가구의 가치함수는 은퇴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먼저 65세 이상 가구의 가치함수는 다음과 같다.

$$V_{j,t}(a) = \max_{c,a'} \frac{c^{1-\sigma} - 1}{1-\sigma} + \beta V_{j',t'}(a')$$

subject to

$$a' \geq 0, c \geq 0$$

$$(1 + \tau_c)c + a' = (1 + r)a + pen$$

은퇴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현실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이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이들을 가능한 단순한 형태로 반영하여 매기 모두가 같은 금액의 공적 부조 pen 을 받도록 한다.

나. 은퇴 이전 가치함수

다음으로 은퇴 이전인 25~64세의 가치함수는 다음과 같다.

19) 제2장 제1절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는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구조가 상당히 다른데 가구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모형은 가족가구보다는 단독가구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

$$V_{j,t}(a, z, e^-, e) = \max_{c, a', l} \frac{c^{1-\sigma} - 1}{1-\sigma} - \gamma_j l + \beta E_{z'|z} V_{j',t'}(a', z', e^-, e')$$

subject to

$$a' \geq 0, \quad c > 0, \quad l \in \{0, 1\}$$

$$(1 + \tau_c)c + a' = y + (1 + r)a - (\tau_l + \tau_p)y + tc(a, e^-; t)$$

$$y = w\theta_j z l$$

$$e^- = \begin{cases} e^- & \text{if } t = 1 \\ \frac{e + y}{2} & \text{if } t = 2 \end{cases}$$

$$e' = \begin{cases} y & \text{if } t = 1 \\ 0 & \text{if } t = 2 \end{cases}$$

$$j' = \begin{cases} j & \text{if } t = 1 \\ j + 1 & \text{if } t = 2 \end{cases}$$

$$t' = \begin{cases} 2 & \text{if } t = 1 \\ 1 & \text{if } t = 2 \end{cases}$$

개별 가구의 상태변수(a, z, e^-, e) 중 a 는 매기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수준을, z 는 가구 고유의 노동생산성을 각각 나타낸다. 상태변수에 붙은 상첨자 '는 다음 기(period)를 나타낸다(예를 들어 a' 은 다음 기 자산수준). 차입은 불가능($a' \geq 0$)하며 가구 고유의 노동생산성은 다음과 같은 확률과정을 따르도록 설정한다(Huggett, 1993; Aiyagari, 1994).

$$\log z' = \rho_z \log z + \epsilon', \quad \epsilon' \sim i.i.d N(0, \sigma_z^2)$$

본 장의 모형이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같은 연령 j 내에서 시점이 상반기($t=1$)와 하반기($t=2$)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존재하는 장려금 지급시기와(장려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노동소득 발생 시기 간의 시차를 고려하기 위한 상태변수

인 e^- 와 e 가 있다. e^- 는 매기 가구의 전년도($j-1$ 세) 반기평균 노동소득을 나타내며 이를 바탕으로 당해연도(j 세) 하반기에서의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진다. e 는 당해연도(j 세) 반기평균 노동소득이며 기준경제에서는 순전히 e^- 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태변수이다.

노동공급 l 은 Chang and Kim(2006)과 같이 매기 노동시장 참여 여부($l \in \{0,1\}$)에 관한 선택이다. 가구는 매기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연령에 따라 γ_j 만큼의 고정 비효용(fixed utility cost)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y = w\theta_j z l$ 만큼의 노동소득을 얻게 되는데 노동소득세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각 τ_l 과 τ_p 의 율로 차감된다. 취업 가구($l=1$)의 노동소득은 모든 취업 가구의 평균적 수준인 w , 연령에 따른 평균적 생산성 θ_j , 그리고 가구 고유의 생산성 z 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 $tc(a, e^-; t)$ 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가구의 상태변수 중 e 와 e^- 가 매기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구의 당해연도 반기 평균소득인 e 는 아직 당해연도 소득이 없는 매년 상반기($t=1$)에는 0이며 하반기로 넘어갈 때 상반기 노동소득으로 변화한다($e' = y$). 가구의 전년도 반기 평균소득인 e^- 는 매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는 변하지 않으며($e'^- = e^-$) 하반기에서 다음 해 상반기로 넘어갈 때는 당해연도 반기 평균소득과 하반기 노동소득의 평균으로 변화한다($e'^- = \frac{e + y}{2}$).

근로장려금 $tc(a, e^-; t)$ 는 아래 식과 같이 현행 제도의 정기신청을 반영하여 매년 하반기에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전년도 연간 노동소득인 $2e^-$ 와 당해연도 하반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a 에 따라 결정되도록 설정한다(그림 4-1 참조).²⁰⁾ 먼저 자산요건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가구는 자산수준이 $\overline{a_2}$

20) 보다 엄밀하게는 자산요건 또한 전년도 자산수준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해연도 하반기 자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보다 큰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산수준이 그보다 작지만 \bar{a}_1 보다 큰 경우에는 절반으로 감액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자산요건이 적용되기 전의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노동소득 $2e^-$ 에 따라 결정되며 노동소득이 커질 때 점차 늘어나는 구간, 변하지 않는 구간, 점차 감소하는 구간으로 구성된다(전년도 노동소득이 0일 때는 장려금 또한 0). β_1 , β_2 , \bar{tc} 는 각각 점증률, 점감률, 최대 지급금액을 나타낸다. \bar{y}_1 , \bar{y}_2 , \bar{y}_3 는 각각 점증구간의 상한, 최대 지급구간의 상한, 점감구간의 상한을 나타낸다.

$$tc(a, e^-; t) = \begin{cases} 0 & \text{if } t = 1 \\ tc(a, e^-) & \text{if } t = 2 \end{cases}$$

$$tc(a, e^-) = \begin{cases} tc(e^-) & \text{if } a < \bar{a}_1 \\ 0.5 \cdot tc(e^-) & \text{if } \bar{a}_1 \leq a < \bar{a}_2 \end{cases}$$

$$tc(e^-) = \begin{cases} \beta_1 \cdot 2e^- & \text{if } 2e^- < \bar{y}_1 \\ \bar{tc} & \text{if } \bar{y}_1 \leq 2e^- < \bar{y}_2 \\ \bar{tc} - \beta_2 \cdot (2e^- - \bar{y}_2) & \text{if } \bar{y}_2 \leq 2e^- < \bar{y}_3 \end{cases}$$

$$\beta_1 = \frac{\bar{tc}}{\bar{y}_1}, \beta_2 = \frac{\bar{tc}}{\bar{y}_3 - \bar{y}_2}$$

라. 불완비시장(incomplete markets)

이상의 설명과 같이 개별 노동생산성에 대한 충격과 조세 및 근로장려제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가구는 은퇴하기 전까지 매기 노동공급 여부와 소비 및 저축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하에서 근로장려제도의 개편 시나리오가 노동공급(노동시장참여)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완비시장(incomplete markets)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모형처럼 개별 생산성 충격이 존재하는데 자산의 종류가 하나인 환경은 불완비시장에 해당한다(Aiyagari, 1994). 불완비시장 하에서 가구

는 생산성 충격으로 인한 미래 소비 변동에 대해 사전적(예비적) 저축으로 형성한 자산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대비할 수 있다. 이때 예비적 동기의 저축은 차입(borrowing)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데, 차입이 가능하다면 생산성이 나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전에 저축을 하지 않았더라도) 차입을 통해서도 과거 대비 소비 감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완비시장과 차입계약 하에서 근로장려세제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동시장참여 유인(incentive)으로 작동한다. 첫째는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financial return)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불완비시장 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경로이다. 둘째는 공적 보험(public insurance)을 통한 경로이다(Athreya et al., 2014). 불완비시장하에서 정부가 가구에 제공하는 이전소득은 안 좋은 생산성 충격이 실현되었을 때 차입계약으로 인해 소비가 크게 감소할 위험을 완화해주는 보험효과를 갖는다.²¹⁾ 근로장려세제는 다른 이전소득과 달리 노동시장참여가 자격요건이므로 가구는 이러한 공적 보험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처럼 현재 노동공급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미래에 지급되는 특성을 고려한 환경에서 근로장려세제는 현재의 노동시장참여를 조건으로 미래의 생산성 및 차입계약 위험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마.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예산제약이나 노동 및 자본의 시장청산(market clearing)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 모의실험 결과는 제도 변화로 정부 세입과 지출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소득세 등이 조정되면서 나타나는 일반균형 효과(general equilibrium effects)를 포함하지 않게 된다. 일반균형 효과는 제도 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가구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가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개편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한종석·장용성·김선빈, 2019). 그러나 본 연구의 모형은 특정 집단(단독가구)에 초점

21) 안 좋은 생산성 충격이 실현되기 전에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을 줄이면서 소비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일반균형 효과를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Athreya et al., 2014; Ortigueira and Siassi, 2022). 또한 일반균형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도 변화의 직접적 효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부분균형 환경에서 정책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2. 모수 설정(Calibration)

모형의 모수는 2019년 한국경제를 바탕으로 설정한다. 본 장에서는 모형 내 모든 가구를 단독가구로 간주하므로 모형의 모수 또한 가급적 단독가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다. 먼저 근로장려세제는 2019년 기준 단독가구의 급여체계를 반영한다. 관련된 모수들은 <표 4-1>에 정리되어 있으며 [그림 4-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자산이 2억 원 미만인 반면 전년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수급대상이며 최대 지급금액은 150만 원이다. 점증률과 점감률은 각각 37.5%, 13.6%이며 점증구간과 최대 지급구간(평탄구간)의 상한은 각각 400만 원, 900만 원이다. 자산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은 절반으로 감액된다.

근로장려세제 이외의 모수 설정 결과는 <표 4-2>에 요약되어 있다. 가구의 시간선효율 β 는 단독가구의 중위 순자산 실적을 맞추도록 하고 기간 간 대체탄력성($1/\sigma$)을 결정하는 모수인 σ 는 1.5로 설정한다(Froemel and Gottlieb, 2021; Ortigueira and Siassi, 2022).²²⁾ 연령별 노동공급 비효율 γ_j 은 단독가구의 연령별 고용률 실적을 목표로 설정한다.²³⁾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모수로는 연령별 평균 생산성과 개별 노동생산성 충격에 대한 모수들이 있다. 연령별 평균 생산성 θ_j 은 Chun(2023)의 추정 결과를 사용한다. 개별 노동생산성 충격과 관련된 모수인 ρ_2 와 σ_2 는 한중석·장용성·김선빈(2019)에서 사용한 값을 반기 기준으로 변환해서 이용한다.²⁴⁾

22) 단독가구의 중위 순자산은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원 수가 1인인 가구의 중앙값(약 5,200만 원)을 이용하였다.

23) 단독가구의 연령별 고용률은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에서 가구주이면서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표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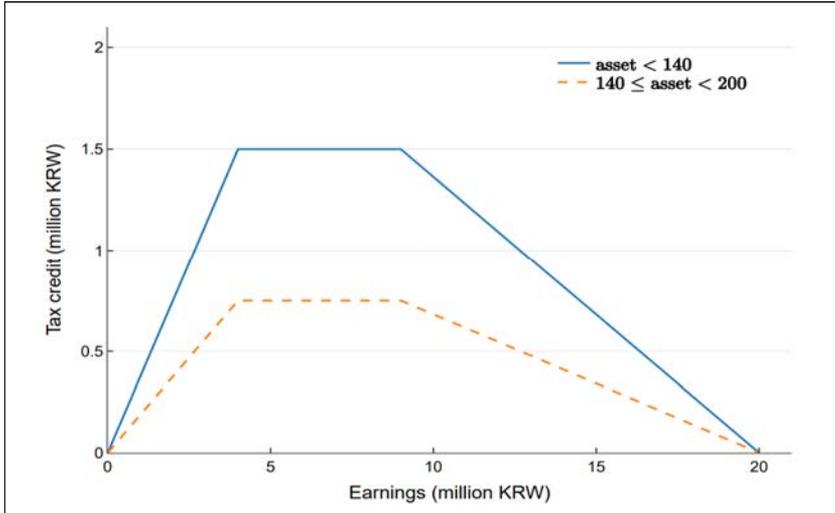
본 장의 모형은 임금률과 이자율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부분균형 환경이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임금률 w 은 단독가구 취업자 평균 노동소득 실적을 맞추도록 하고 이자율 r 은 연간 2.8%가 되도록 설정한다(세전 연간 4%, 자산소득세율 30%).

〈표 4-1〉 근로장려금 산정식 모수 설정(2019년 단독가구 기준)

변수명	값	설명	비고
\bar{y}_1	0.04	점증구간 소득상한	400만 원
\bar{y}_2	0.09	최대지급 구간 소득상한	900만 원
\bar{y}_3	0.20	점감구간 소득상한	2000만 원
β_1	0.375	점증률	150/400
β_2	0.136	점감률	150/(2000-900)
$\bar{t}c$	0.015	최대지급 금액	150만 원
\bar{a}_1	1.40	자산요건 (50% 감액)	1.4억 원
\bar{a}_2	2.00	자산요건	2억 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근로장려금 지급구조(2019년 단독가구 기준)



자료: 저자 작성.

24) 반기 기준으로의 변환방식에 대해서는 Chang and Kim(2006)의 부록을 참고하였다.

〈표 4-2〉 기타 모수 설정 결과

변수명	값	설명	목표 통계량 / 참고자료
J_R	41	은퇴 연령	65세
J	50	최대 연령	74세
β	0.972	시간선호율	단독가구 중위 순자산
σ	1.5	기간 간 대체탄력성($1/\sigma$)	Ortigueira & Siassi (2022)
γ_j	-	연령별 노동공급 비효율	단독가구 연령별 고용률
θ_j	-	연령별 노동생산성	Chun (2023)
ρ_z	0.879	생산성 충격 지속성	한중석 외 (2019) 반기화
σ_z^2	0.042	생산성 충격 분산	한중석 외 (2019) 반기화
$\sigma_{z,j=1,t=1}^2$	0.183	최초 생산성 충격 분산	$\sigma_z^2/(1-\rho_z^2)$
w	0.118	유효노동 단위당 임금률	단독가구 취업자 평균 노동소득
r	1.4%	세후 실질 이자율	연간 2.8%
τ_c	0.10	소비세율	한중석 외 (2019)
τ_l	0.068	노동소득세율	한중석 외 (2019)
τ_p	0.045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제도
pen	0.06	은퇴 가구 공적 이전소득	반기 당 600만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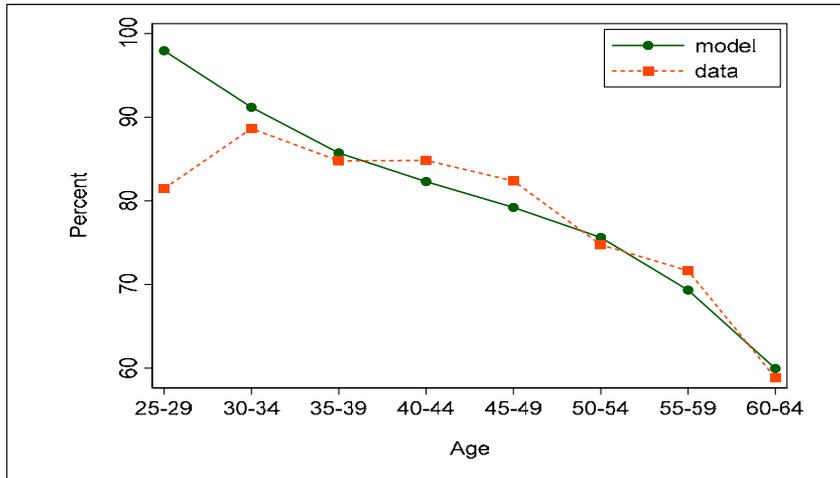
노동소득세율 τ_l 과 소비세율 τ_c 는 한중석·장용성·김선빈(2019)에서 사용한 값을 반영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τ_p 는 현행 근로자 부담분인 4.5%로 설정한다. 모든 은퇴 가구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 pen 은 반기당 600만 원으로 한다.

정책 모의실험에 앞서 정량화된 모형의 기준경제가 현실경제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연령별 고용률의 경우 20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실적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4-2). 모형이 20대의 고용률 실적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실직(job separation)에 대한 위험이나 구직과정에서의 마찰(search friction)과 같은 노동시장 여건과 학업 등 여러 현실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²⁵⁾²⁶⁾

25) 기준경제에서 20대 단독가구 대부분이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

다음으로 <표 4-3>은 기준경제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을 연령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순전히 모형으로부터 계산된 수급가구 비중인데 모형에서 모든 가구는 단독가구이기 때문에 이를 인구 기준의 실적인 <표 2-6>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b)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로 계산한 연령대별 단독가구 비중이다.²⁷⁾ (a)와 (b)를 곱하여 인구 중 단독가구 수급자 비중을 나타낸 것이 (c)이다. 이를 <표 2-6>의 단독가구 수급 비중과 비교해보면 연령대별로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2] 연령대별 고용률



주 : 실적(data)은 자료에서 가구주이면서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표본 기준. 연령별 고용률의 5세별 평균. 모형(model) 연령별 고용률은 같은 연령 내 반기별 고용률의 평균. 실적(data) 연령별 고용률은 같은 연령 내 월별 고용률의 평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 2019.

- 한 정책 모의실험에서 20대 단독가구 가구의 노동공급 증가는 미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9년 확대 개편으로 20대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제3장의 실증분석 결과와 상충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장의 분석은 고용률 측면에서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30세 이상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이 제도 개편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 26) 모형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이나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연구주제이지만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 27) 이때 가구주이면서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표본을 단독가구로 분류한다.

〈표 4-3〉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

(단위 : %)

집단	(a) 수급 비중 (모형, 단독가구 대비)	(b) 단독가구 비중 (자료, 인구 대비)	(c) 수급 비중 (a×b, 인구 대비)
25~29세	24.1	16.9	4.1
30~34세	23.9	15.6	3.7
35~39세	18.7	13.0	2.4
40~44세	15.2	12.5	1.9
45~49세	14.1	15.3	2.2
50~54세	14.7	16.7	2.5
55~59세	16.5	17.6	2.9
60~64세	22.5	16.9	3.8

주 : (b) 단독가구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에서 가구주이면서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표본의 비중. (c) 수급 비중은 단독가구로만 구성된 모형경제의 수급 비중 (a)와 자료에서의 단독가구 비중 (b)의 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 2019.

제3절 근로장려세제 정책 모의실험(Policy Experiment)

제3절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정량모형을 이용한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이다 : (1) 지급시기 단축(기존 다음 해 하반기에서 다음 해 상반기로), (2) 산정식 조정(지급금액 10% 인상). 각 개편안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정책 모의실험 세부 사항은 〈표 4-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4〉 근로장려세제 정책 모의실험 구성

개편 시나리오	소제목 구성	정책 모의실험 세부 사항	장/단기효과
지급시기 단축	1-가.	지급금액 유지	단기효과
	1-나.	지급금액 현재가치 유지	단기효과
	1-다.	지급금액 현재가치 유지	장기효과
산정식 조정	2	지급금액 10% 인상	장/단기효과

자료 : 저자 작성.

각 개편 시나리오에서의 노동공급 변화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단기 변화는 자산 등 가구의 상태변수 분포를 기준경제 상반기에 고정된 상태에서 제도 개편 전후의 상반기 고용률을 비교해서 식별한다. 이는 상반기 시작 시점에서 예기치 않은 제도 변화가 발표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기 효과 혹은 같은 사람의 노동시장참여 선택 변화를 보여준다.

1.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단축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가 앞당겨질 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노동공급(노동시장참여)이 증가할 수 있다. 첫째는 지급금액의 현재가치(present discounted value)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경로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financial return)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데 동일한 지급금액의 지급시기가 앞당겨지게 되면 노동시장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평가한 금전적 보상의 현재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둘째는 근로장려세제의 공적 보험(public insurance)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경로이다. 본 연구의 모형처럼 차입제약 및 불완비시장 환경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현재가치로 같더라도 지급시기가 앞당겨지면 안 좋은 생산성 충격과 차입제약으로 인해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위험이 완화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따라서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노동공급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경로를 통한 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정책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첫 번째는 지급금액을 유지하면서 지급시기를 기존의 다음 연도 하반기에서 다음 연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시기를 반기 앞당길 때 지급금액을 반기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모의실험에서 나타나는 노동공급 변화에는 지급금액의 현재가치 증가 및 공적 보험의 개선으로 인한 효과가 모두 포함되는 반면 두 번째 모의실험에서 나타나는 노동공급 변화는 보험 효과만을 반영하게 된다.

가. 지급금액 유지(현재가치 증가)

지급금액을 유지하면서 지급시기를 반기 앞당기는 정책 모의실험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경제에서 $t = 2$ (하반기)에 지급되는 전년도 연간 노동소득($2e^-$)에 대한 근로장려금 $tc(a, e^-)$ 가 개편경제에서는 $t = 1$ (상반기)에 지급된다.

$$tc(a, e^-; t) = \begin{cases} tc(a, e^-) & \text{if } t = 1 \\ 0 & \text{if } t = 2 \end{cases}$$

〈표 4-5〉는 기준경제와 개편경제의 상반기 고용률과 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개편경제는 자산 등 가구의 상태변수 분포를 기준경제 상반기에 고정했을 때의 결과이므로 두 경제의 상반기 고용률 차이는 지급시기 단축으로 인한 단기적인 노동공급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단독가구 전체로는 지급시기 단축으로 인해 상반기 고용률이 단기적으로 3.1%p 증가한다. 단독가구의 비중이 15%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전체 고용률로는 0.5%p 정도의 증가에 해당한다. 가구의 범위를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가구로 좁히면 상반기 고용률 증가는 3.6%p로 늘어난다.

〈표 4-5〉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단기 고용률 변화

집단	상반기 고용률 (%)		변화(%p) (b)-(a)
	(a) 기준경제	(b) 지급시기 단축 경제	
단독가구 전체	78.96	82.02	3.07
자산요건 충족	84.08	87.63	3.55
+생산성 하위 50%	72.55	79.11	6.56
+생산성 하위 25%	66.42	76.46	10.04
+생산성 하위 10%	67.75	78.72	10.97
+생산성 하위 5%	68.83	79.93	11.10

주 : (a), (b)는 각 경제 상반기 고용률. '지급시기 단축 경제'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유지하면서 지급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긴 경제. 정책 모의실험은 자산 등 가구의 상태변수 분포를 기준경제에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 집단 구분에서 '자산요건 충족'은 자산 2억 원 미만인 단독가구. '+생산성 하위 x%'은 자산요건을 충족하면서 생산성이 하위 x%에 속하는 단독가구.

자료 : 저자 작성.

〈표 4-6〉 생산성 집단별 가상(hypothetical) 반기 노동소득

(단위 : 만 원)

집단	가상 노동소득 (반기)	
	분위수	평균
단독가구 전체	-	1,852
생산성 하위 50%	1,674	1,204
생산성 하위 25%	1,231	959
생산성 하위 10%	933	763
생산성 하위 5%	789	660

주 : 가상(hypothetical) 노동소득은 가구가 노동시장에 참여($l = 1$)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반기 노동소득.

자료 : 저자 작성.

〈표 4-6〉은 생산성 집단별로 가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상(hypothetical)의 반기 노동소득을 분위수와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하반기 모두 일한다고 했을 때 생산성 하위 10% 정도부터가 연간 소득 요건(2,000만 원 이하)을 만족해서 다음 해 근로장려세제 수급이 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의 3~6행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노동공급 변화를 생산성 집단별로 보여주고 있다. 생산성이 낮아 상반기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다음 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큰 집단일수록 단기 고용률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성 하위 5% 집단은 지급 시기 단축으로 단기 고용률이 10%p 이상 증가한다.

나. 지급금액 현재가치 유지

다음은 지급금액을 현재가치로 유지하면서 지급시기를 반기 앞당기는 정책 모의실험을 수식화한 것이다. 기준경제에서 하반기($t = 2$)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tc(a, e^-)$ 가 개편경제에서는 $(1 + r)$ 로 할인되어 상반기($t = 1$)에 지급된다.

$$tc(a, e^-; t) = \begin{cases} \frac{1}{1+r} tc(a, e^-) & \text{if } t = 1 \\ 0 & \text{if } t = 2 \end{cases}$$

이러한 정책 모의실험에서 나타나는 노동공급 변화에는 앞서 지급금액을 유지하면서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경우와 달리 지급금액의 현재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모의실험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지급시기 단축으로 차입제약에 걸릴 위험이 완화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의 중요성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출 측면에서는 (노동공급 변화가 없을 때) 실질 비용을 유지하면서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개편 방안이기도 하다.

〈표 4-7〉은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단기 고용률 변화를 지급금액의 현재가치 변화별로 나타낸 것이다. (b)열은 지급금액을 현재가치로 유지하면서 지급시기를 단축했을 때의 상반기 고용률 변화이며 (a)열은 지급금액을 유지함에 따라 현재가치로 증가하는 경우의 결과로 〈표 4-5〉의 마지막 열과 동일하다. 두 모의실험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지급금액이 현재가치로 증가하는 경우의 노동공급 변화가 더 크지만 차이는 미미하다(1% 수준). 단독가구 전체로 보나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집단으로 좁혀서 보나 지급금액의 현재가치를 유지하면서 지급시기를 앞당겼을 때의 고용률 변화가 지급금액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대부분이 공적 보험 기능이 개선(더 가까운 미래 차입제약 완화)되는 경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의 두 모의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시기를 6개월가량 단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책 목표가구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노동공급 효과는 주로 가구의 차입제약 위험이 완화되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로를 통해서 나타난다.

한편 이상의 정량적 결과를 해석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개별 가구의 노동생산성 충격에 대한 공적 보험이 근로장려세제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기초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공적 보험 기능을 하는 다른 제도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근로장려세제와 달리 매월 지급되기에 가구의 차입제약 위험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모형에 함께 고려한다면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더 작게 나타날 수 있다.

〈표 4-7〉 지급금액 현재가치 증가 여부에 따른 단기 고용률 변화 비교

집단	상반기 고용률 변화 (%p)		비율 (%) (b)/(a)
	(a) EITC 현재가치 증가	(b) EITC 현재가치 유지	
단독가구 전체	3.07	3.04	99.0
자산요건 충족	3.55	3.53	99.4
+생산성 하위 50%	6.56	6.52	99.4
+생산성 하위 25%	10.04	9.96	99.2
+생산성 하위 10%	10.97	10.86	99.0
+생산성 하위 5%	11.10	10.98	98.9

주: (a), (b)는 각 정책 모의실험에 따른 상반기 고용률의 수준 변화(기준경제 대비). 각 정책 모의실험은 자산 등 가구의 상태변수 분포를 기준경제에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 '자산요건 충족'은 자산 2억 원 미만인 단독가구. '+생산성 하위 x%'는 자산요건을 충족하면서 생산성이 하위 x%에 속하는 단독가구.

자료: 저자 작성.

다. 장기적 효과

지금까지는 자산 등 가구의 상태변수 분포를 기준경제 상반기에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한 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상반기 초에 예기치 못한 제도 변화가 발표되었을 때의 단기 노동공급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조금 더 긴 시계에서는 제도 개편에 따라 가구의 저축 결정이 변하면서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형성이 달라지며 이와 함께 노동공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장기적인 노동공급 변화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준경제와 개편경제의 장기균형을 비교한다. 달리 말하면 기준경제에서 태어나는 코호트의 생애주기와 개편경제에서 태어나는 코호트의 생애주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표 4-8〉은 기준경제와 개편경제 장기균형에서의 고용률을 비교한 것이다.²⁸⁾ 상반기 고용률 변화를 기준으로 한 단기 변화(표 4-7)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장기 변화 또한 기준경제와 개편경제의 상반기 고용률을 기준으로 분석한다.²⁹⁾ 먼저 단독가구 전체로 보면 장기에서의 상반기 고용률 증

28) 직전 정책 모의실험과 동일하게 현재가치가 동일한 지급금액의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29) 개편 전후 장기균형에서의 상·하반기 평균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는 부록 〈부표 1〉에 제시하였다.

가는 2.9%p로 단기(3.1%p)에서보다 다소 작아진다. <표 4-8>의 2~4행은 기준경제에서의 생애소득 집단별로 장기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생애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대체로 고용률이 더 증가한다. 이는 생애소득이 낮은 진입 코호트일수록 생애주기에서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표 4-9 참조).

종합해보면 지급시기 단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생애소득이 낮은 가구의 (상반기)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는 정기신청 제도에서 근로장려금이 연간소득에 대해 산정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를 포함한 1년 중 근로기간(0, 6, 12개월)의 장단기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표 4-8>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장기 고용률 변화

집단	상반기 고용률 (%)		변화 (%p) (b)-(a)
	(a) 기준경제	(b) 지급시기 단축 경제	
단독가구 전체	78.96	81.84	2.88
생애소득 하위 50%	84.80	88.90	4.10
생애소득 하위 25%	88.05	92.26	4.21
생애소득 하위 10%	91.12	94.73	3.61

주 : (a), (b)는 각 경제 상반기 고용률. '지급시기 단축 경제'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현재가치로 유지하면서 지급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긴 경제. '생애소득 하위 x%'는 기준 경제에서 생애소득이 현재가치로 하위 x%인 진입 코호트(entering cohort)를 나타냄.

자료 : 저자 작성.

<표 4-9> 생애소득 집단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 : 기준경제

집단	수급 비중 (%)
단독가구 전체	18.7
생애소득 하위 50%	25.8
생애소득 하위 25%	29.6
생애소득 하위 10%	34.0

주 : '생애소득 하위 x%'는 기준경제에서 생애소득이 현재가치로 하위 x%인 진입 코호트(entering cohort)를 나타냄.

자료 : 저자 작성.

2. 근로장려금 산정식 조정 : 지급금액 확대

두 번째 정책 모의실험에서는 지급시기를 기준경제에 고정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산정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기준경제에 고정한 상태에서 지급금액을 10% 인상하도록 한다. [그림 4-3]은 이를 시각화한 것으로 실선과 점선은 각각 기준경제와 개편경제의 산정식이다(자산 1.4억 원 이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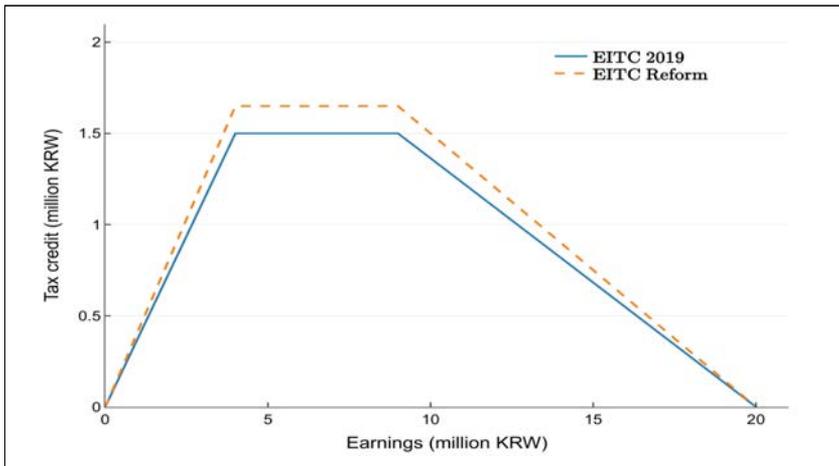
이러한 정책 모의실험으로 소득요건 내 거의 모든 소득구간에서 지급금액이 상승하게 되며 최대 지급금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높아진다.³⁰⁾ 이때 노동공급은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은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증가하는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기존과 노동공급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소득효과). 따라서 정책 모의실험에서의 노동공급의 정량적 변화는 서로 상쇄하는 두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분석은 지급시기를 단축하는 정책 모의실험과 같이 가구의 상태변수 분포를 기준경제 상반기에 고정했을 때 나타나는 노동공급의 단기 변화와 상태변수 분포의 변화까지 고려한 장기 효과로 구분해서 진행한다. 먼저 지급금액 확대 개편으로 인한 단기 노동공급 변화는 <표 4-10>과 같다. 전체 단독가구의 상반기 고용률이 0.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산요건을 충족하거나 생산성 하위 집단일수록 노동공급 반응이 더 크다. 장기(<표 4-11>)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생애소득 하위 50%의 상반기 고용률은 1%p 증가하지만 생애소득 하위 25%와 10%는 각각 0.6%p, 0.2%p 증가에 그친다. 이는 생애소득 하위 집단일수록 지급금액 확대 개편의 소득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앞서 <표 4-9>에서 보았듯이 기준경제에서 생애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수급가구인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에 따라 지급금액이 늘어날 때 생애 근로장려금 증가 또한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30) 기준경제인 2019년 화폐가치 기준.

이상의 정책 모의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금액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목표 가구인 생산성 하위 집단의 노동시장참여를 늘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생애주기 관점에서 목표 가구를 생애소득 하위 집단으로 정의하면 소득효과로 인해 노동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림 4-3] 근로장려금 산정식 조정 시나리오 : 최대 지급금액 확대



자료: 저자 작성.

[표 4-10] 최대 지급금액 확대에 따른 단기 고용률 변화

집단	상반기 고용률 (%)		변화 (%p) (b)-(a)
	(a) 기준경제	(b) 산정식 조정 경제	
단독가구 전체	78.96	79.44	0.48
자산요건 충족	84.08	84.69	0.61
+생산성 하위 50%	72.55	73.95	1.40
+생산성 하위 25%	66.42	68.34	1.92
+생산성 하위 10%	67.75	69.79	2.04
+생산성 하위 5%	68.83	71.92	3.09

주: (a), (b)는 각 경제 상반기 고용률. '산정식 조정 경제'는 근로장려금 산정식을 [그림 4-2] 점선으로 조정한 경제. 정책 모의실험은 자산 등 가구의 상태변수 분포를 기준 경제에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 '자산요건 충족'은 자산 2억 원 미만인 단독가구. '+생산성 하위 x%'은 자산요건을 충족하면서 생산성이 하위 x%에 속하는 단독가구.

자료: 저자 작성.

〈표 4-11〉 최대 지급금액 확대에 따른 장기 고용률 변화

집단	상반기 고용률 (%)		변화 (%p) (b)-(a)
	(a) 기준경제	(b) 산정식 조정 경제	
단독가구 전체	78.96	79.79	0.83
생애소득 하위 50%	84.80	85.78	0.98
생애소득 하위 25%	88.05	88.68	0.63
생애소득 하위 10%	91.12	91.28	0.16

주 : (a), (b)는 각 경제 상반기 고용률. '산정식 조정 경제'는 근로장려금 산정식을 [그림 4-2] 점선으로 조정한 경제. '생애소득 하위 x%'는 기준경제에서 생애소득이 현재가치로 하위 x%인 진입 코호트(entering cohort)를 나타냄.

자료 : 저자 작성.

제4절 소 결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에서는 나이, 생산성, 자산 등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 개편 시나리오의 노동공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개편 시나리오로는 (1)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를 현행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는 것과 (2) 지급금액 10% 인상의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정책 모의실험을 통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목표 가구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차입제약 위험이 완화되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로를 통해서 나타난다. 둘째, 지급금액의 확대는 횡단면에서 생산성이 낮은 가구의 노동시장참여를 늘릴 수 있으나 생애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 소득효과로 인해 노동공급 증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2019년에 도입된 반기신청 제도는 노동소득 발생시기와 이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간의 차이를 줄였다는 측면에서 목표 가구들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안

본 장에서 수행한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점이 존재한다.

첫째,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노동공급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모형에 기초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공적 보험 기능을 갖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나 실업급여와 비교했을 때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공적 보험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생계급여나 실업급여는 시장소득에 따라 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유인을 상쇄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제도 간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cf. Ortigueira & Siassi, 2023).

둘째, 2019년에 도입된 반기신청 제도나 영국 근로장려세제의 월별 지급 등 지급주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³¹⁾ 본 연구에서는 연 1회 수급인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를 단축하는 모의실험을 통해 노동소득 발생시기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간의 시차가 제도의 노동공급 효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반기신청처럼 지급주기를 연 2회으로 늘리게 되면 공적 보험 기능이 개선되는 경로를 통해 노동공급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지급금액을 확대하는 모의실험을 통해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를 정의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해 노동공급 반응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급금액이나 점증구간 등 산정식의 세부 요소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목표 가구의 노동공급이나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상반기 고용률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인한 전체적인 노동공급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고용률 변화를 포함한 1년 중 근로기간(0, 6, 12개월)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지급주기에 대해서는 진성진 외(2022) 참조.

제 5 장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상 FGI : 제도 인지와 근로유인을 중심으로

제1절 개요

청년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와 근로 유인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단독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30세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경험자 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두 번째는 청년 단체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인터뷰 참여자 5인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인터뷰 대상자의 익명성 유지를 위해 수급자 인터뷰 참여자는 #1~#5로 통칭하고 청년 단체 관계자는 #a와 #b로 통칭하도록 하겠다.

〈표 5-1〉 근로장려금 수급자 FGI 참여자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근로장려금 수급연도	최근 수급금액	가구유형
#1	남	28	사무직	2022, 2023	951,230원	단독가구
#2	남	29	프리랜서	2020, 2021, 2023	635,000원	단독가구
#3	남	24	대학생	2023	743,000원	단독가구
#4	여	21	대학생	2023	1,650,000원	단독가구
#5	여	26	프리랜서	2023	681,000원	단독가구

자료 : 아이알씨(2024. 8.).

제2절 FGI 주요 내용

1.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 형태와 수급 경험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소득 요건을 어떤 형태로 충족시켰는지 질문하였다. 인터뷰 대상자(interviewee)들은 1년 내내 일하기보다 부분적으로(5개월, 7개월) 일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일의 종류는 정규직도 있었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불안정 일자리가 많았다.

- 회사에서 받았었는데 작년에는 일을 다 하지 않아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서 7개월했던 것 같아요. (#1)
- 친누나가 편의점을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일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직원으로 등록이 됐었어요. 그거 소득 플러스랑 저작권료가 좀 경미하지만 나와요. 그거랑 실연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개를 바탕으로 아마. (#2)
- 작년에도 대학생이었는데 일을 방탈출 카페에서 프리랜서 식으로 일을 했어서 한 5개월 정도 했어요. (#3)
- 작년 상반기까지는 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복학해서 대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태권도 사범으로 일했어요. (#4)
- 작년에는 연기 강사학원 일을 했었어요. 올해 6월에 퇴사를 해서 지금은 프리랜서 강사로. 간간이 단기 팝업스토어 알바나 그런 거를 또 이어서 했었어요. (#5)
-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퇴사자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해에 6월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그렇거나 그런 식이고. (#a)
- 주로 안정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챙기고 그걸 받게 되죠. (#b)

수급 경험에 대해서 수급횟수와 수급 대상자 알림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여러번 수급하게 된 경우 그 경위를 물어보았다. 먼저 수급횟수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이 작년에 수급했고 올해에도 수급 대상자가 되었다고 응

답했다.³²⁾ 나머지 2명은 이전에 3회 수급했고 올해에도 수급 대상자가 되었다고 답했다.

3회 수급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여러 번 수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인턴,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서 근로, 그리고 건강상 이유로 근로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 저는 맨 처음에 받았었을 때는 인턴이었나 그랬을 거고 두 번째 받았었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소득이 낮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로시간이 짧아서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대상자 알림은 세무서를 통해서 받았는데, 알림 방식은 전화가 3명, 우편이 1명, 국민비서 플랫폼을 통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1명이었다.

- 저는 카톡으로 연락받았어요. 미리 신청한 적은 없는데 국민 비서라고 해서 메시지로 알려주더라고요. (#5)

2.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질의했다. 5명 중 3명은 수급전 제도에 대해 몰랐다고 했고 2명은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몰랐다고 응답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신청대상자로 연락이 왔을 때 처음 제도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고 했고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부모님이 받아서 알게 되었거나 시사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었던 경우였다.

- 사실 깊게 알지는 못하는데 대상자라고 연락이 먼저 와서 알게 된 제도여가지고.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다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4)
- 일단은 제가 주소지 이전 있잖아요. 1인 가구 이전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어요. 근데 그전부터 저는 1인 가구에 살았는데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일을 알바를 하거나 이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

32) 인터뷰 일자가 대상자 안내와 지급시기 사이인 2024년 7월임을 참고.

였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알게 됐어요. 주소 이전을 하고 나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는데. (#5)

- 전화가 와서 왜 내가 대상자지 하고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로 일했으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
-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받기 전에도 저희 부모님이 그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나 쪽으로 일을 그러니까 편의점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저 이름으로 날아오더라고요. (#2)
-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부양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 금액이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인터뷰 대상자뿐 아니라 주변의 20대들은 근로장려금을 인지하고 있는지 주변 분위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근로장려금의 잠재적 대상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들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반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 저랑 비슷한 프리랜서 친구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풀타임 말고 시간제로 학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오래 일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거는 같아요. 제가 듣기로. (#2)
- 한 1~2학년 쯤에는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좀 적다 보니까 1인 가구로 등록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한 3~4학년 돼서 1인 가구로 등록이 되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친구가 많아서 한 22살, 23살 넘어갈 때쯤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4)
- 주변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서울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다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5)

근로장려금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를 넘어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자격 요건, 지급액 결정 구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지 질문했다. 청년단체 인터뷰 대상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인터뷰 대상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바뀌는 형식이라는 점

과 자녀장려금이 있다는 정도의 제도 이해가 있다고 응답했다. 더 나아가 한 인터뷰 대상자는 수급 경험 이후 국세청 누리집 검색을 통해 소득에 따른 지급액 결정 구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 저는 알고 있었어요. 소득이랑 만약에 자녀장려금이면 부양 자녀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 가구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2,200이 아니라 2,400인가 2,6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가까울수록 지원금이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 일단은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일단은 많이 번다 해서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번다고 아예 많이 받는 것도. 되게 애매하게 별면 금액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치에 몇십만 원 차이로 그 받는 금액도 달라지거든요. 검색하면 근로장려금 지급표 금액 그 표가 있는데 연도별로 들어오는 표가 따로 있어요. (#5)

3.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유인 효과

인터뷰 대상자에게 본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근로장려금 수급을 고려해서 노동참여 결정을 하는지 질문했다. 인터뷰 대상자 5명 중 3명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없어도 일은 계속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퇴직 후 개인적으로 쉬거나 다른 일(task)을 할 계획이었지만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 돈벌이를 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인터뷰 대상자는 올해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내년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 어느정도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 중이라 응답했다. 주변의 대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내년의 근로장려금을 고려해서 하반기에라도 일하려는 경우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 저는 올해 제가 하고자 하는 공연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그냥 집중하기 싶은. 그쪽은 돈을 안 번다 생각하는 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예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돈을 조금씩이라도 벌여놓으면은 근로장려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 아예 일 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일을 해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더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5)

- 작년에는 근무를 했으니까 올해 대상자가 돼서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올해는 아무런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내년에는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근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4)
- 저의 의견도 들어가지만 주변 친구들 대학생 친구들의 의견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올해는 일 안 하니까 안 했으니까 내년에 못 받겠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조금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저를 포함해서 올해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못 받으니까 올해 좀 하반기라도 일을 해볼까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유인도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청년단체 인터뷰 대상자는 잠재적 정책 대상자가 근로장려금을 직접 수급해보거나 주변으로부터 경험을 전해 듣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노동유인 효과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첨언하였다.

- 근로를 장려하고 이런 그런 취지가 와닿는다고보다는 그냥 내가 전에 이만큼 일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볼까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뭔가 그 경험담을 들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친구가 누가 아르바이트 해서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았더라 그럼 나도 내년에 아르바이트 그럼 일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받았다고 하니까 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공유가 되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정말 드라마틱한 취업을 해서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을 하게 되긴 할 것 같아요. (#a)

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주기

근로장려금의 신청시기와 지급시기 사이 약 3~4개월 기간이 단축된다면 노동유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어보았다.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이 신청 이후 지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빨리 받게 되어 좋을 뿐, 노동유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 좋기야 하겠지만 그게 근로유인 효과랑 관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받는 입장에서는 빨리 받는 게 좋으니까. (#2)

-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상황에서 3개월을 기다리는 건 되게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면 기분이야 좋지만 별로 유인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4)

현행 반기 혹은 연 1회로 지급되는 지급 주기에 대해서 질문했다. 지급 주기가 짧아져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근로유인이 높아지는 경로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다. 2명의 인터뷰 대상자는 지급 주기를 짧게 하더라도 월 지급은 금액이 너무 낮을 수 있어서 분기 지급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반기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그 이유로는 지급주기가 짧아져서 적은 금액으로 나눠서 들어오면 사소하게 사용할 것 같다는 점을 들었다. 청년단체 관계자는 지급액에 따라 지급주기의 효과는 다를 것이라는 종합 의견을 주었다.

- 이거를 달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뉘었을 때는 지금 ○○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체감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해요. (#2)
- 저는 많아봤자 두 번. 두 번을 나눠서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풀로 받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40만 원 받으면 한 분기에 해도 1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만약 4학년 되고 취준생이 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어디다 쓸 것 같냐라고 여쭙보시면 저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세 달에 한 번씩 10만 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취업 준비를 위해서 근로장려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제 개인적으로 사소한 곳에 쓸 것 같아서 한 번에 모아두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
- 사실 저는 약간 이 정책의 타깃층이 누구지, 예를 들면 2,2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사다리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의 지급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b)

5. 청년 정책으로서의 근로장려금

20대 청년에게 근로장려금 정책이 갖는 특징에 대해 질문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근로장려금의 세 가지 장점에 주목했다. 첫 번째는 간편한 신청 절차와 신청 대상 알림 등을 통해 ‘찾아오는’ 정책이라는 점, 그래서 정보 격차에 영향을 덜 받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다른 청년 정책들의 경우 챙겨야 할 구비서류도 많고 정책 대상자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의견이었다.

- 저는 월세 지원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좀 사실 뭐 제출해야 될 게 조금 있었어요. 뭘 내야 되고 해야 되는, 근로장려금은 되게 간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3)
- 기존 청년 정책들은 집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도 너무 다르고 너무 준비가 까다롭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죠. 근데 이거는 내가 찾아갈 필요 없고 그냥 찾아오는, 그게 좀 다르죠. (#b)

두 번째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근로장려금이 제한된 인원이나 재원으로 인한 선발 형식이 아니라서 경쟁이 없다는 장점을 꼽았다. 다른 청년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원이나 예산 한도를 두는 경우가 많은 상황 속에서 대비되는 특징이라는 설명이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경쟁이 없다보니 정보 공유를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고 응답했다.

- 대부분 지금 나온 청년정책들이 경쟁도 다 치열하거든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걸 위한 교육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 반면에 이거는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신청해서 산정해서 돈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어쨌든 그게 반영되고 그걸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신청하면 되니까 편하다. (#a)
- 그 시기가 되면 다양한 단톡방들에서 이거 애들아 잊지마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경쟁을 안 하니까. (#b)

셋째, 근로장려금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는 특징,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지급액 결정 방식이 복잡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 저는 주변에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생계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대학생이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월급이 100만 원 이상이 많이 없는데 한 번 일회성이지만 들어왔을 때 165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아르바이트 이상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4)
-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작년에 풀로 받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 대상자에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가 조금은 부족하게 설명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4)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저는 보통 방학 때 돈을 모아놓고 학기 중에는 알바를 거의 최소화하면서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돈이 저도 생계에 도움이 됐었고, 단점도 사실 다 비슷한데 근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탈락한 사람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왜 갑자기 안 됐는지 이런 거를 이유도 모르고 막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저도 왜 제가 이만큼 봤는지도 몰랐고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솔직히 이게 마름모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겠지만 저희가 잘 모르지 않나. (#3)
-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혜택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2)
- 취업 애매한 문턱에 있는 학생들이랑 갓 졸업한 사람들이나 그런 가운데 있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5)

제3절 소 결

본 장은 20대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적 있는 청년들과 그런 청년들을 많이 접했을 청년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FGI의 내용을 다루었다.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1)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인지와 (2) 근로장려금의 노동유인 증가 효과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았을 때 적용되었던 소득 형태에 대한 질의 응답에서는 대부분 1년 내내 일하기보다 부분적으로 1년중 몇 개월 씩만 일을 한 경우가 많았다. 연중 퇴사 혹은 취업, 단기 아르바이트로 발생된 근로소득일 경우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급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1회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명, 3회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이 2명이었다. 여러번 수급하게 된 이유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는 인턴, 낮은 임금 일자리, 건강이유로 일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수급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3명이 모른다고 응답했고 2명이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알고 있는 경우도 부모님이 받은 경험 때문에 알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주변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어떻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나 자취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다. 자격 요건과 지급액 결정 구조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으나 한 인터뷰 대상자는 수급 경험 후 국세청 누리집에서 검색하여 사다리꼴 지급액 구조를 소상히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근로장려금이 노동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5명 중 3명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없었더라도 계속 일했을 것이라 응답한 반면, 2명은 근로장려금 받을 것을 고려해서 올해 일부러 일을 했다고 답변했

다. 정책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근로유인을 높인다는 정성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 청년 정책으로서 가지는 특징에 대한 질문에 (1)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정책 대상자가 찾아갈 필요 없이 ‘찾아 오는’ 정책이라는 점, (2) 제한된 인원 혹은 재원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보편성, 그리고 (3)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점을 들었다.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은 단기 일자리 및 연중 퇴사자·취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며, 제도에 대한 인지는 수급 경험이나 주변의 경험자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보며 실제로 내년 근로장려금 받을 것을 고려해서 일을 했다는 응답이 있어서, 근로유인 효과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정성적 근거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은 청년 정책으로서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보편적이며 생활보조가 필요한 대상에게 현금 지원이 되는 특징을 지닌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 6 장

결 론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본 연구는 2019년 정책 개편으로 인해 30대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된 것에 착안하여 근로장려금 도입이 청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장려금의 두 가지 정책 목표인 저소득자의 (1) 근로장려와 (2) 소득보조 중 근로장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제2장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설명,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통한 수급가구 수 중심 현황, 그리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30세 미만 수급자와 연령집단 전체 평균과의 비교를 다루었다. 근로장려금의 수급 요건, 지급액 결정 구조, 제도 변천 등을 소개하였고, 현황에서는 2019년 정책 개편으로 인해 30세 단독가구의 수가 단독가구 전체 증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보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에서는 30세 미만의 소득과 자산 분포, 그리고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의 여러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이중차분법을 통해 20대 단독가구의 노동참여가 근로장려금 도입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으로 (1) 근로장려금의 도입 효과를 본다는 점과 (2) 추정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자산요건을 대부분 만족하는 20대에 집중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가구형태로만 식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 패널 데이터가 아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해서 많은 표본을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의 도입은 2019년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노동참여를 3.03%p 증가시킨다고 추정되었다(비교집단 1, 통제변수 포함). 추정 모형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연령대(20대 초반, 20대 후반)와 교육수준(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도시지역 여부 등으로 세부집단을 나누어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20대 후반, 전문대졸 이상, 도시지역인 집단에서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에 대한 정보 격차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1) 코로나 유행의 영향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에 다르게 나타나지 않거나 (2) 코로나 유행의 영향이 2023년 이후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위 정책 효과를 해석해야 한다. 또한, 정책효과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도입 직후 시기인 2019년에는 미미한 효과였으나 2020년부터 효과가 커진 것을 미루어 보아, 수급 경험 혹은 주변에 수급 경험자가 발생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정책 효과가 더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나이, 생산성, 자산 등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인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제도의 노동공급 유인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의 노동공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개편안으로는 (1)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를 현행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단축하는 것과 (2) 지급금액 확대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급시기의 단축은 근로장려제도의 노동공급 효과를 유의하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차입제약 위험이 완화되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로를 통해서 나타난다. 둘째, 지급금액 확대는 횡단면에서 생산성이 낮은 가구의 노동시장참여를 늘리나 생애소득이 낮은 가구는 소득효과로 인해 노동공급 반응이 제한된다.

제5장에서는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FGI 내용을 다룬다. 인터뷰 결과, 연중 취업자·퇴사자 혹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된 경위는 대부분 대상자 알림을 통해 사후

적으로 알게 되었거나 주변에 수급 경험자를 통해 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근로장려금이 노동참여 유인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5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원래는 일할 계획이 없었지만 다음 해 근로장려금 받을 것을 고려해서 일부러 일을 했거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 도입이 20대 단독가구의 근로유인을 증가시킨다는 효과가 있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여 현행 제도가 20대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음을 보였다. 양적 분석뿐 아니라 FGI를 통해 실제로 내년 근로장려금을 고려하여 현재 노동결정을 하는 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책 도입시점이 지날수록 정책 효과가 커진데 대해서 수급 경험자 및 주변 수급 경험자를 통해 인식이 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해석을 제공한다.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효과가 미미했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1) 정책 도입이 아닌 정책 변화를 보았기 때문이거나 (2)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대 단독가구 외에도 다른 정책대상들을 두루 포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주기 단축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지급시기 단축은 나중의 소득보다 당장의 소득을 높인다는 경로를 통해 근로유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존 연 1회에서 현행 반기로 지급하는 정책 변화는 근로유인 증가라는 목표에 알맞은 정책 변경이었다고 평가된다. 지급주기 변경도 본질적으로는 지급시기를 당기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인터뷰 결과, 지급금의 액수가 높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 이런 경우엔 오히려 지급주기가 월단위 식으로 쪼개져서 지급되는 것보다 현행 반기나 분기 단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는 보편적인 정책이지만, 청년 정책으로서의 의의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었다. 다른 청년 정책들과 달리 신청이 간편해서 찾아서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찾아 오는’ 정책으로서의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상 인원 및 채용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원자 간 경쟁이 없다는 특징 또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자 등 소득 지원이 절실한 대상에게 현금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서 역할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 당국은 근로장려금이 청년 정책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지하고 알리는데 노력할 뿐 아니라, 근로장려금 수급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에 근거하여 청년 대상 고용·노동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정책 방향이라 생각된다.

근로장려금이 근로유인을 증가시킨다는 효과가 추정되었지만, 이후로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 홍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청년 대상으로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을 비롯한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홍보 내용에서는 신청과 지급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데에서 더 나아가 지급금 결정 구조 같이 구체적이지만 근로유인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루어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야 한다.

참고문헌

- 고지현 · 김정환 · 박정흠(2023),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문정 · 김빛마로(2020), 『2019년 확대 · 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남재량(2018),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지혜 · 이정민(2018),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41(3), pp.1~59.
- 신우리 · 송헌재(2018),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응용경제』 20(2), pp.107~138.
- 아이알씨(2024. 8.), 『근로장려금 도입이 청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관련 좌담회 결과 보고서』.
- 이현주(2022), 「사회보장제도 근거 강화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 활용을 위한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진성진 · 전영준 · 박지혜(2022), 『근로장려세제(EITC)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2024.
- 한중석 · 장용성 · 김선빈(2019), 「근로장려세제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25(2), pp.1~52.
- 홍우형(2021), 「근로장려세제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변화에 따른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14(4), pp.77~106.
- Aiyagari, S. R.(1994), "Uninsured Idiosyncratic Risk and Aggregate Sav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3), pp.659~684.

- Arkhangelsky, Dmitry, Susan Athey, David A. Hirshberg, Guido W. Imbens, and Stefan Wager(2021), “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1(12), pp.4088~4118.
- Athreya, K., D. Reilly, and N. Simpson(2014), “Young Unskilled Women and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Insurance Without Disincentives?,” Working Paper Series, 14-11,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 Chang, Y., and S.-B. Kim(2006), “From Individual To Aggregate Labor Supply : A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A 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7(1), pp.1~27.
- Chun, D.(2023), “Essays on Heterogeneous-agent Macroeconomics and Public Policies,” Ph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 Erosa, A., L. Fuster and G. Kambourov(2016), “Towards a Micro-Founded Theory of Aggregate Labour Supply,” *Review of Economic Studies* 83(3), pp.1001~1039.
- Froemel, M., and C. Gottlieb(2021),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Targeting the poor but crowding out wealth,”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54(1), pp.1~35.
- Han, J., Chang, Y., and S.-B. Kim(2021),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Heterogenous Agent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32(1), pp.80~115.
- Huggett, M.(1993), “The risk-free rate in heterogeneous-agent incomplete-insurance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7, pp.953~969.
- Ortigueira, S., and N. Siassi(2022), “The U.S. tax-transfer system and low-income households : Savings, labor supply, and household formation,” *Review of Economic Dynamics* 44, pp.184~210.
- _____(2023), “On the Optimal Reform of Income Support for Single Paren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25, 104962.

[부록]

〈부표 1〉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장기 고용률 변화 : 상·하반기 평균

집단	반기 고용률 (%)		변화 (%p) (b)-(a)
	(a) 기준경제	(b) 지급시기 단축 경제	
단독가구 전체	80.21	80.26	0.05
생애소득 하위 50%	86.80	86.91	0.11
생애소득 하위 25%	90.10	90.24	0.14
생애소득 하위 10%	92.84	92.98	0.14

주 : (a), (b)는 각 경제 상·하반기 평균 고용률의 평균. '지급시기 단축 경제'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현재가치로 유지하면서 지급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긴 경제. '생애소득 하위 x%'는 기준경제에서 생애소득이 현재가치로 하위 x%인 진입 코호트(entering cohort)를 나타냄.

〈부표 2〉 점증구간 및 점감구간 조정에 따른 장기 고용률 변화 : 상·하반기 평균

집단	반기 고용률 (%)		변화 (%p) (b)-(a)
	(a) 기준경제	(b) 산정식 조정 경제	
단독가구 전체	80.21	80.18	-0.03
생애소득 하위 50%	86.80	86.77	-0.03
생애소득 하위 25%	90.10	90.13	0.03
생애소득 하위 10%	92.84	92.93	0.09

주 : (a), (b)는 각 경제 상·하반기 고용률의 평균. '산정식 조정 경제'는 근로장려금 산정식을 [그림 4-3] 점선으로 조정한 경제. '생애소득 하위 x%'는 기준경제에서 생애소득이 현재가치로 하위 x%인 진입 코호트(entering cohort)를 나타냄.

◆ 執筆陣

- 진성진(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천동민(한국은행 거시모형실 과장)

근로장려금 도입이 청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 | | |
|------------|---|
| ▪ 발행연월일 | 2024년 12월 26일 인쇄
2024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1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1 Fax (044) 287-6089 |
| ▪ 조 판 · 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4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751-6

KLI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ISBN 979-11-260-0751-6